

부 록 1.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기초적 분석

김 흥 렬
(문화재정책국장)

I. 머리말

II. 위원회 제도

1. 효용성
2. 장·단점
3. 분류기준
4. 유형
5. 우리나라 위원회제도

III. 문화재위원회 운영현황

1. 구성·운영
2. 심의사항
3. 의안별 심의절차
4. 성격

IV. 문화재위원회 역할 분석

1. 분과위원회 기능 영역
2. 위원 위촉기준
3. 위원 임기 및 연임 조정
4. 전문위원 활용 실태
5. 시·도 위원 결직
6. 위원 권한 한계
7. 문화재위원회 위상 정립

V. 맺음말

※ 부록 : 문화재위원별 재임회수,
연도별 위촉현황
(1952~2005)

국문 요약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대체 구성·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촉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증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책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주제어 : 위원회제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위원회, 역할분석, 위상정립

I. 머리말

위원회제도는 현대 행정국가의 산물이다. 위원회제도는 19세기말 영국과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책 입법에 의해 발전된 제도이다.

현대국가는 영·미뿐만 아니라 서구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행정기능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 변화를 초래하여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까지 담당해야 하는 행정국가를 일컫는다.

전통적인 행정조직은 단독제(Monocracy)에 의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행정국가는 행정권의 강화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어 단독제조직으로서의 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독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합의제(Polycracy) 형태의 위원회제(committee)가 등장하게 된다.

위원회제도가 행정에 도입된 초기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집행권 없는 자문위원회가 대부분이었으나. 행정에 있어서 점차 판단의 독립성·공정성 및 신중성을 보장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행정청의 집행권을 기속하거나 자문을 넘어서 권력화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행정위원회가 수시로 설치되고 있는 바, 위원회제도의 본질적 기능 및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다.

어쨌거나 위원회제도는 적어도 민주주의와 관료주의에서 파생되고 있는 역기능적인 문제점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정부·교육·종교·기업 등 각종 형태의 조직에서 널리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제도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위원회제도는 정부 수립 후 민주행정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궁극적 이념인 능률성과 민주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정치·사회의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가 가속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증대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위원회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건설한 위원회의 운영이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대부분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정책은 일반정책과는 달리 문화재(Cultural Heritage)¹⁾라고 하는 보존공물(保存公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고도(高度)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학구적 소양이 겸비된 연구적 성격을 띤 특수정책²⁾이므로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이 필수요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정책 결정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합리화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반면에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개발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 등 경제성을 배제한 박물관식 보존에만 매달려서 오히려 문화재 보호에 역기능을 초래함으로써 합의제 기구의 특성의 하나인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적 여론이 없지 않다.

문화재정책이 유독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심의)에 의해 좌우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³⁾, 실정법상 유일한 문화재정책의 최고심의기구이며 현실로서도 문화재위원회에 대

1) 문화재는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문화재는 역사성·예술성·학술성·관상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특수성과 함께 인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는 문화적 자산으로 이해되고 있다.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관 최종 연구보고서, 2002, 「한국 문화재보호법의 발전과정과 정비방향」, 문화재청, p.140.

또한, 문화재가 민족예지의 총합체로서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전통적 재산이며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각국의 자주성 확립과 단결의 상징으로써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김수갑, 1997, 「문화재보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보』 제365호, p.100.

2) 문화재는 그 자체를 직접 공공용(公共用)이나 공용(公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특정한 물건(무형의 형태도 포함)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관상적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그러므로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과 같은 무형의 것을 제외하고는 강학상(講學上) 보존공물(保存公物)에 속한다. 보존공물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유지·관리하는 개개의 유체물이라는 점에서 공공용물 및 공용물과 같은 공물(公物)과 다를 바 없으나, 보존공물은 공공용물이나 공용물처럼 일반 공중 또는 행정청의 현실적인 사용에 공여되는 것이 아니라, 공물인 당해 물건 자체를 보호하는 점에서 보존공물을 보호하는 문화재정책의 법적 특성이 있다.

이상규, 1967, 「법적 측면에서 본 문화재 관리」, 『문화재』 제3호.

또한 문화재 자체가 소장하고 있는 개념보다는 무형의 개념적 가치성을 찾아내고 이를 보존하는 제 수단을 강구하고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서 문화 창조의 모태가 되도록 전승시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화재 정책의 특수성이 있다.

정재훈, 1969, 「문화재관리 행정의 기본방향」, 『문화재』 제4호, p.122.

3) 문화재청 소속 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문화재보호법 제3조) 이외에, 문화재기술위원회(동법시행령 제10조) 및 기술자격시험위원회(동법 제7조의10)가 있다. 문화재기술위원회는 시공평가제도에 있

체할 기구나 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역할과 그 공과에 대하여는 엄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고는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위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선 기초적 논의로서 위원회제도를 고찰하고, 이어서 문화재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다음,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을 분석·평가한 후, 결론을 맺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고를 기초적 분석이라 제(題)함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안의 의결내용이 아닌 외연적인 부분에 국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심의결과만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어서 심의의안 내용의 분석은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회의록 작성이 필히 요망된다.

II. 위원회 제도

1. 효용성⁴⁾

위원회(Committee)란 복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으로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화합하는 인간의 집단이다.

정책결정은 계층제에 있어서는 주로 독임제 또는 단독제(Monocracy)가 일반적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합의제(Polycracy)는 복수인으로 구성 운영되는 위원회제(committee)이다.

위원회제도는 단독 기관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행정조직(部局制)과 다른 특색을 지녀서 합의제가 그 특징이며 행정조직의 피라밋 구조에서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으므로 부국제 행정조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점을 가진다. 위원회제도가 가장 잘 발달한 영국에서는 지방정부 자체를 위원회제도로 구성하고 있을 정도이며, 미국은 경제·보건·

어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2002.2.28)한 합의제기구(임기2년, 위원7인)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하고 성실한 수리업자 및 용역업자를 우대하고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시공평가제도를 도입(2001.7.1) 하였다. 평가대상은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수리공사 그리고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10억원 미만인 수리공사 일지라도 포함된다. 한편, 기술자격시험위원회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기술 및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다.

4) 이명재, 1996, 「한국 행정상 위원회제도의 실태분석」, 『상명대 사회과학연구』 제9호, pp.163~164.

사회복지·교육 등 분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독립규제위원회 형식으로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에 순차적으로 계층적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전체로서 계층제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써 행정의 통일성이 확보된다. 반면에 위원회제도는 계층제의 지나친 경직성을 완화하여 행정의 분권화 작용을 유도한다.

위원회제도는 어떤 문제에 대해 한 사람의 경험보다 많은 전문가의 폭넓은 경험을 반영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토의를 거쳐 결정에 도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제도도 그 자체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국제 행정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부국제의 결함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어쨌거나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하므로 전문성이 있고, 전문분야의 대표이므로 대표성이 있으며, 이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합의하여 의결하므로 민주성을 지니게 된다. 행정이 점점 전문화·복잡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전문성, 대표성, 민주성을 지닌 위원회야말로 오늘날 현대행정국가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2. 장·단점

위원회제도는 합의제기관으로서 계층제하의 단독형 행정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또한 그 자체가 지니는 결함도 있다. 위원회제도가 지니는 장·단점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장점

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두뇌를 합하면 한 사람의 두뇌보다 낫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상승효과(Synergic Effect)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

② 각 부문 단위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효과적이다.

5) 유훈, 2000, 『행정학원론』, 법문사, pp.366~368; 윤재풍, 1985, 『조직학원론』, 박영사, pp.269~272; 윤우근, 1996, 『조직관리학』, 다산출판사, pp.509~512; 이명재, 1996, 앞의 논문, pp.164~166.

위원회는 상호 관련된 단위간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즉석에서 의견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③ 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조직에 민주성을 부여한다.

④ 중지(衆智)의 집약을 낳는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반영되어 많은 중지를 모을 수 있다.

⑤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적인 편견이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⑥ 위원회는 관련자들의 동기유발을 촉진한다.

정책의 관련자들은 위원회의 토의와 결정에 배석함으로써 이해가 증진되어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려는 동기가 더욱 유발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참여하여 결정한 것에 잘 따르기 때문이다.

⑦ 위원회의 구성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훈련의 기능도 한다.

위원회제도는 모든 위원들의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의 비판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므로 위원들의 사고능력을 증진시킨다.

(2) 단점

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든다.

위원회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② 책임이 위원 전체에 분산되어 책임의식이 미약하다.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곧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위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책임감의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비치 방법이 고려되나 부작용이 적지 않다⁶⁾.

③ 타협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나머지 결국 집단적 동의를 최소 공통분모적 타협을 추구하게 되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④ 위원간의 능력차로 인하여 몇몇 위원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6) 유훈, 2000, 앞의 책, p.395.

3. 분류기준7)

위원회의 유형은 그 관점과 기준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L. Urwick은 위원회를 집행위원회, 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교육적위원회로 분류하고 있으며, J. M. Pfiffner는 행정위원회, 규제위원회, 독립위원회, 자문위원회, 직책에 의한 위원회, 초당파위원회로 분류하고 있고, 유훈은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조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달한 독립규제위원회는 권한으로는 의결위원회이고, 기능으로는 통제위원회이고, 구성으로는 초당파위원회이고, 지위로는 독립위원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에 있어서 위원회는 실정법(정부조직법)상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분류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강학상(講學上)으로 자문위원회를 다시 그 성질에 따라 자문위원회(협의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위원회로 세분화하여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자문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는 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 전문적 의견을 청취·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속력 없는 의사결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자문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협의의 자문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Deliberation Committee)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심의의 필요성에서 법령에 열거한 필요적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이 행정청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에서 자문적 기구이다.

의결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자문적 기능을 수행하며 의결결과는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지만, 의결된 권한을 독립적으로 대외에 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자문적 기구이다.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ssion)는 의결과 함께 스스로 집행력까지 행사하므로 행정청의 하나이다. 자신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조직을 갖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게 된다.

7) 이명재, 1996, 앞의 논문, pp.166~167. ; 김주섭, 1976, 「위원회의 기능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p.21~23. ※ 김주섭은 자문, 조정, 행정, 독립규제위원회로 분류하고 있으나, 기능·성격상으로는 이명재 교수가 분류한 자문, 심의, 의결, 행정위원회와 유사하다.

4. 유형

(1) 자문위원회(협의의 자문위원회)

가. 성격

협의의 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시행에 각계 인사를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청취,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성하는 합의제 기구이다. 자문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거나 자발적으로 행정관청의 정책결정에 참고될 의사만을 제공하므로 집행권이 없다. 합의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자문기구 중 가장 초보적이고 구성이 쉬워서 각 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자문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 임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위원장의 선임방법도 일정치 않아 위원들에 의하여 호선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지명되고 있다.

나. 기능

자문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행정관청의 어떤 시책이 타당한 것이며 일반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행정가에게 주는 점에서 자문에 응한 조언은 의미가 크다. 그리고 어떤 행정관청의 사업계획에 대한 일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명서 발표나 결의문의 채택 그리고 설명회 개최 등이 대표적 정책지지수단이다.

자문위원회는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종류의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계 각층의 의견과 동향을 행정관청에 전달하는 청취 소(Listening Post)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서로 이해가 대립하는 위원들 사이에 있어서의 견해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로의 도달을 촉진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돕는 경우가 많다.

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행정관청의 정책사항에 대하여 자문의 수준을 넘어서 직접 특정부문의 연구할 능력과 신뢰를 갖춘 단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참여하므로 위원 다수의 견해와 결정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중립적인 결정으로 정실행위를 봉쇄할 수도 있다.

다. 효력

자문위원회는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설치 가능한 합의제 기구이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자문위원회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의 방편으로 치우치는 경향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심의위원회

가. 성격

심의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관청의 정책결정이나 행정처분에 앞서 심의하는 집행권 없는 합의제 기구인 점에서는 조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와 같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임기 및 선임방법과 법령에 열거된 필요적 심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의결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요구가 점증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의결위원회처럼 행정관청을 구속하지는 못하지만, 자문내용이 법령에 필요적 심의사항으로 열거됨으로써 어느 정도 시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관청과 시민 양측 모두에게 무리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제시한 조언, 시책의 지지, 청취소(Listening Post)의 역할, 합의의 도달, 특정연구의 수행, 정신행위의 방책 이외에 진보적인 행정 억제 등 활동을 들 수 있다.

다. 효력

심의위원회는 헌법·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설치근거가 있어야 하는 합의적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권이 있어 이에 대하여 행정관청을 구속할 수 있으나, 심의결과에 대한 정책결정에의 반영여부에는 구속력이 없어서 자문위원회와 같이 형식적 운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심의위원회는 법령에 열거된 심의사항을 근거로 심의사항에 대한 누락 없는 심의절차의 경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심의사항 이외에 시민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이거나 예산 낭비요소가 많은 진보적인 행정업무에 제동을 걸어 행정가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3) 의결위원회

가. 성격

의결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공정·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성하는 합의제 자문기구이다.

의결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여 대표하는 권한은 없으므로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문적 기

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결위원회는 그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제 기관이므로 상설의 필요성으로 보통 사무국 조직을 갖는 편이다.

나. 기능

의결위원회는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고 전국적 규모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의 중립성 확보에 기여한다. 의결위원회는 자기 주체로서 자기의사를 확고히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되므로 위원회의 활동이 적극성을 띤다.

다. 효력

의결위원회는 그 의사결정이 당해 행정관청의 정책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어야 한다.

의결위원회는 합의를 통하여 행정관청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전문지식을 토대로 장기적 측면에서 합리적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정책결정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행정관청과 갈등이 야기되면 위원 위촉권을 갖고 있는 행정관청이 위원위촉을 통하여 어용화(御用化)를 시도할 우려가 있으며 자칫 행정능률을 저해하기 쉬운 측면도 있다.

(4) 행정위원회

가. 성격

행정위원회는 행정수반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에 있으면서 행정관청과 동일한 권력구조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행정관청의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권한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상설적 기관이므로 위원은 공무원 신분이고 사무국 조직을 갖게 된다.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으로서 각종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집행권 없는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위원회 등 자문적 합의제 기구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행정위원회는 19세기 말 이래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입법과 재판만으로는 급진적인 공업화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규제기구로 1887년 주간(州間) 통상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다⁸⁾.

8) 이상규, 1991, 「행정위원회의 기능과 문제점」, 『월간 감사』 제26호, p.26.

이 제도는 소위 「독립규제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으로서 입법 및 사법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면서 행정부에 속하기는 하나 보통의 행정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제의 계열과는 거리를 둔 이른바 ‘제4부’적인 성격⁹⁾을 지니고 있어서 전통적 권력분립의 이론에 대한 하나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여 그간 공정성·공평성 및 책임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겪어 왔다.

즉 이 제도는 공정성 및 공평성과 관련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기할 수 있지만, 그 반면에 무책임하거나 정책상의 기능 통합이 어려우며 지나친 법적 절차의 강조로 말미암아 사무가 지연되고 법원화(法院化)하는 경향까지 노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행정수장이외에 의회 등 제3기관에서도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수장이 임명하여 정책상의 통합을 기하고 있어서 독립성이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자율성, 민주성 및 공평성 확보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위원회의 성격은 직무의 독립성, 기능 통합성, 합의제 행정관청 등 3가지로 규정지을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되어 설치되는 특수행정기관이다. 그러므로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행정조직 계층성에 따르는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므로 위원의 신분보장이 확보되어 있다.

행정위원회는 근대 입헌주의의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집행기능뿐만 아니라 준사법적 기능과 준입법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합의체로 한 것은 그 담당하는 사무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가급적 다양한 전문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결정의 신중성을 확보하려는 고려의 표현이다.

나. 기능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그 기능은 각 행정위원회에 따라 달라서 ① 집단적 의사결정 ② 집행적, 준입법적 및 준사법적 기능 ③ 중립성과 계속성의 확보로 요약된다.

행정위원회는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소수의 위원만이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스테거링 텀 제도(Staggering Term System)¹⁰⁾를 통하여

9) 현대사회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언론을 제4부라고 일컫는다. 이유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행정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규정할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 이명재, 1996, 앞의 논문, p.168:178.

행정의 중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펼쳐져 있는 정부의 행정기능은 원칙적으로 원·부·처·청이 행사하고, 어떤 특수한 행정분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안과제나 분쟁 등을 재결하는 기능은 주로 행정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하는 게 일반적 역할 분담이다. 따라서 당초의 현안과제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폐지되는 일몰법(Sunset Law)¹¹⁾ 형태를 띠는 행정위원회가 상당수다.

결국, 행정위원회는 ① 직무의 독립적 수행 ② 합리적 의사결정 ③ 전문지식의 활용 ④ 행정의 민주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자칫 행정능률을 저해하기 쉬운 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 효력

행정위원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독립적 행정기관이므로 결정된 의사는 법적 집행력을 갖는다.

행정위원회는 행정집행권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권과 재결을 행하는 준사법권도 갖는다. 행정위원회는 준입법권·준사법권 및 행정권 등 3권을 모두 갖는다는 점에서 계층제하의 행정관청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정치적,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진다.

그러므로 행정위원회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운영이 강력히 요청되는 행정분야와 전문적·기술적 성격이 짙은 행정분야에 설치할 때 행정 능률을 기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위원회제도

우리나라의 행정상 위원회는 실정법(정부조직법)상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등 2분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문기구를 자문·심의·의결위원회로 세분화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문의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법 제5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서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역시 행정위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를 제시

11) 일몰법은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이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명재, 1996, 앞의 논문, p.168, 178.

하고 있다.

자문위원회(강학상의 자문, 심의, 의결기구 모두 포함)는 각종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참모조직으로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합의제 기구이다

행정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행정기능은 원칙적으로 원, 부, 처, 청이 행사하고 행정위원회는 어떤 특수한 행정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을 재결하는 일을 주로 행사한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된 위원회(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예 : 감사원), 대통령 자문기구(예 :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등이고, 기타 위원회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공정·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업무내용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고 전국적 규모에 걸친 것으로 각 법률에서 위임받거나 정부조직법 제4조의 포괄적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부령·훈령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에 연결되어 있지만 업무내용이 행정기관에 관련되거나 보조기관의 의견 조정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각 부처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예이다

생각건대 자문위원회를 법적 지위나 성격·기능상의 측면에서 볼 때, 자문·심의·의결 등 3유형으로 구별하는 것은 학문적 성과와 함께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실익이 있다. 그러므로 자문위원회의 세분화를 강학상의 영역으로만 치부함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비취질 수 있다.

다음 <표 1>은 우리나라 위원회 위원장별 실태조사표이다. 위원장의 직급이 필요이상 고위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의 운영이 경직되어 있는 점은 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차관의 경우 위원장직이 두드러지게 줄어들었으나 위·아래로 분산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간인 위원장(임명 및 호선)이 1996년 13%[(26+20)÷348], 2003년 20% [(47+25)÷365], 2005년 23%[(60+28)÷381]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민간인으로 위촉된 위원회가 스스로 위원장을 선임한 경우를 살펴보면, 1996년 5.7%(20/348), 2003년 6.8%(25/365), 2005년 7.3%(28/381)로 점진적인 증가는 정치·행정의 민주화 추세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되어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아직도 행정관청이 위원회를 관변단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는 설치 초기부터 민간인 위원 및 민간인 위원장 호선제도를 실시한 점은 민주적 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5년도 민간인 호선 위원장이 우리나라 위원회 381개 중 28개로서 7.3%에 불과한데 비하면,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호선제도는 선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개적인 호선도 비민주적이란 점에서 일부에서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도 위촉시 전체 위원장을 비밀투표로 선출하였다.

표 1. 우리나라 위원회 위원장별 실태

(단위 : 개)

구분	연도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1-2급	기타	민간인		계
								임명	호선	
자문 위원회	1996	0	21	48	149	58	20	16	20	332
	2003	1	25	55	105	70	11	36	24	327
	2005	5	27	50	107	63	16	52	22	342
행정 위원회	1996	0	0	1	1	0	4	10	0	16
	2003	0	3	12	5	6	0	11	1	38
	2005	0	4	9	6	4	2	8	6	39
계	1996	0	21	49	150	58	24	26	20	348
	2003	1	28	67	110	76	11	47	25	365
	2005	5	31	59	113	67	18	60	28	381

※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한 「정부위원회 기본현황」으로서 분석·정리한 것임.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정부위원회 관리 지침」(2005.1)¹²⁾을 살펴보면, 위원회 당 위원은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위촉의 20%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위촉 30%를 지방거주 전문가로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36%를 여성으로 위촉하여 향후 2007년까지 40%로 확대할 것을 지침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위원회 통계는 1977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위원회 총수는 310개로 집계됐다. 그 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위원회의 남설(濫設)이 문제로 제기되어 격년을 주기로 통폐합을 거듭하였으며, 2005년 11월 30일 현재 381개가 설치되어 있다.

12) 행정자치부는 한시적 운영을 명시하여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일몰법(Sunset Law)의 도입을 각 부처에 권고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가급적 법률·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로, 부령·훈령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Ⅲ. 문화재위원회 운영현황

1. 구성·운영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설치된 합의제 자문기구이다.

문화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근거하며, 세부시행은 「문화재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의 선정은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002년까지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의 권위자’로 명시)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역시 임기 2년의 200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은 소속 분과위원장이 위촉하는 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소속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중요무형문화재 등 8종의 국가지정문화재와 근대문화재 등록사항이며, 이들 문화재의 성질별 분류에 따라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분과위원회별로 독자적으로 심의·종결 처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합동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재청 담당과 ‘과장’이 임명되고 있으며, 이들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전담하고 있다.

9개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국보지정분과 : 국보 지정 ② 건조물문화재분과 : 건조물문화재 및 민속가옥 ③ 동산문화재분과 : 동산문화재 ④ 사적분과 : 사적지 ⑤ 무형문화재분과 : 무형문화재, 가옥을 제외한 민속자료 ⑥ 천연기념물분과 : 천연기념물 및 명승 ⑦ 매장문화재분과 : 매장문화재 ⑧ 근대문화재분과 : 등록문화재 ⑨ 문화재제도분과 : 문화재관련 법령·제도

2. 심의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심의사항은 어느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든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규정된 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인정과 그 해제
-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 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 ⑦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
- ⑧ 매장문화재의 발굴
- 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⑩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 ⑪ 그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의안별 심의절차¹³⁾

(1) 문화재 지정의안

문화재위원회의 가장 주요 의안이 문화재 지정의안이다. 이 의안은 심의 의결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신청자(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로부터 문화재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당해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대부분 시·군·구 경유)는 유물·유적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 지정문화재로 추천할 만하다고 인정되면 이 현지조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보고(추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는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

13)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의안은 그 종류에 따라 절차가 상이할 수 있는 바, 의안분류에 있어서 의안 내용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는 너무 주관적일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관행적 절차상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분류로 정리하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하여금 현지실태 조사를 정밀히 실시하고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문화재위원회에의 부의 안건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한다.

문화재위원회가 지정신청 대상문화재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보에 지정예고 고시를 30일간 실시해야 한다. 부결된 안건은 원안대로 재상정할 수 없는 것이 법리(一事不再議 原則)이자 문화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일 것이다.

「지정 예고제」는 이해당사자, 관계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문화재지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데 있다. 문화재청장은 지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고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문화재위원회에 재상정하여야 하며, 문화재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여부나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의결로서 확정하게 된다.

문화재로의 지정이 가결된 의안은 관보에 지정 고시함과 동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거쳐 신청자에게 지정서(무형문화재의 경우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포함)를 교부한다.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대상이 무형문화재일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의 지정가치와 함께 이를 실연할 수 있는 당해 기·예능인의 능력을 심의하여 보유자(속칭 ‘인간문화재’)로 인정하는 의결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신청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정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이 있다.

또 문화재청장은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이때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하며,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지 않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문화재 수리의안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그 가치가 유지·보존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원형보존의 원칙」이 있다. 문화재는 오랜 연륜에 따라 자연적 마모와 인위적인 훼손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문화재를 현재의 상태대로 보존하기 어렵거나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마모되고 훼손된 문화재를 과거의 기록을 토대로 조사하고 실측·설계하여 옛 기법을 좇아 수리하고 조경 등 주위환경을 정비하여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수·정비’라 한다¹⁴⁾. 문화재 보수·정비를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6조는 「수리」라 규정하고, ‘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재 수리는 소유자(관리단체)가 실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 수리는 원형보존에 따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므로 아무나 할 수 없다. 각 시·도에 등록된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그리고 문화재수리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신청자(소유자, 관리단체)로부터 문화재수리신청서를 제출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문화재의 현지실태를 조사하여 문화재청에 실측·설계를 요청하거나 설계도를 작성하여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실태조사는 수리 여부의 필요성을 확인·점검하는 정도에 그친다.

문화재청은 청내에 설치된 설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한 후 필요적 보완사항은 지방자치단체나 설계자에게 보완토록 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기본설계 작성 및 설계심사에 따른 소요기간 등으로 안전상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문화재위원회의 가결이 있게 되면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을 통보하여 시행청으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하여 수리공사에 착수토록 한다.

(3) 검토의안

검토의안으로는 문화재 발굴 허가, 지정문화재의 해제, 현상변경 허가, 지표조사, 문화재 국내의 전시, 그리고 각 부처 협의 및 민원사항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신속한 심의 절차를 요하는 까닭에 간략한 절차가 관건이다.

검토의안은 관련 행정기관, 단체 및 개인의 민원성 안전으로서 주로 질의 응답식 협의 내지 협조사항이지만, 현대행정이 민주적, 합리적으로 전개되는 행정과정에서 본다면 중요한 안전일 수 있다.

검토의안은 필요시 문화재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곧바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되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바람직한 결론에 이를 때까지 수시로 수정·보완하여 자문(심의)을 받는다.

(4) 주요현안사항 보고

문화재청장은 연차 주요업무계획, 중장기계획,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사항, 심의시 검토 요구한 사항, 주요사항 처리 결과 그리고 경상적 업무 등을 요약하여 수시로 문화

14) 문화재관리국, 1985, 『문화재관리 실무편람』, p.110.

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들의 심의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주요현안사항 보고가 의안이 아니므로 보고내용을 경청하고 질의 응답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인지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4. 성격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정책의 결정이나 행정처분에 앞서 심의하는 합의제 자문기구이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조사·심의사항 11개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라 규정짓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필요적 심의사항으로 인하여 단순히 선택적으로 안건을 부의하는 자문위원회와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높여 왔다.

문화재청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법적 하자가 없는 한 문화재정책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의 권능을 존중하여 왔다. 실제 그 동안 심의의결 결과가 무시된 적이 거의 없다.

문화재위원회는 법에 열거된 필요적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행정관청을 구속할 수 있고, 심의결과는 최종적으로 문화재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심의위원회가 아닌 의결위원회로 이해될 수 있다.

IV. 문화재위원회 역할 분석

문화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문화재정책의 최고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통과기구로서 심의의안에 합법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가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역할 분석은 분과위원회 기능, 전문위원 활용 실태, 시·도 위원 겸직, 위원 위촉 기준, 위원 임기 및 연임 조정, 위원 권한 한계, 위상 정립 등으로 한정했다¹⁵⁾.

15) 심의의 주관적 변수인 위원의 도덕성, 민주성, 공정성, 태도효과 및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은 2004년도 『문화재』 제37호에 게재된 필자의 줄고 「문화재위원회 설문조사 분석」을 참고 바란다.

1. 분과위원회 기능 영역

무형문화재분과 조정

무형문화재분과의 경우 공예기술과 민속예능은 외형상 무형(無形)인 점에서는 유사하나 내용면에서는 상이하므로 소관분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예기술은 장인의 솜씨로서 이 솜씨가 창조하는 구체물을 통하여 그 예술은 유형물로 나타나지만, 민속예능은 소리나 몸짓 등으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술을 구현하므로 그 결과물은 무형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확연히 다르다. 말하자면 무형문화재분과는 마치 공과대학장 또는 음악대학장 등이 행정학과 교과목 개편 검토회의에 학장단회의의 의례적인 회원으로서 참석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분과에서 공예기술은 그 솜씨에서 앞으로의 동산문화재가 창조된다는 점에서 동산문화재분과로 이관하고 무형문화재분과는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의 개칭이 바람직하다.

매장문화재분과 폐지

매장문화재분과는 사적분과에서 1997년 분리 설치되었으나, 다시 사적분과로 흡수·통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당시 제6분과(2002. 5. 6, 「매장문화재분과」로 개칭)를 신설한 이유는 제3분과(역시 같은 해 「사적분과」로 개칭)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안건이 격증함에 따른 것이다. (1996.12.31.관보 참조)

당초 사적분과에서 매장문화재분과의 분리 설치이유가 문화재의 성질상의 분화(分化)에 의한 분과가 아니고, 단순히 매장문화재 발굴허가건수 격증에 대한 해결책이었으므로 애초부터 분과(分科)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문화재의 종류에 「사적」이 있으며 사적의 지정 범위에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다.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서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 정의하고 있어서 문화재의 종류로서의 「사적」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매장문화재는 앞서 정의에서 보듯이 매장된 문화재를 다루는 것이므로 동산, 건조물, 민속자료 등 여러 종류의 문화재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며, 대부분 사적에서 출

토된다.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별로 해당 분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건조물에 포장된 매장 문화재는 건조물의 해체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역시 해당 분과에서 일체화해서 다루고 있다.

사적분과와 매장문화재분과에 겸임위원 1명이 상호 배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원을 겸임으로 위촉하는 이유는 한정된 정원 속에서 분과별 심의의 전문성을 확장하고 분과간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심의의 원활함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양(兩)분과에 위원의 겸임위촉은 출토되는 매장문화재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유구와 관련된 사적적(事蹟的) 의미를 상호 파악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자체가 양분과가 유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표 2>에서 보듯이,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구제발굴은 대부분 단순반복적인 검토사항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 심의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 상당수를 담당 부서에서 전결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문화재보호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합법화 내지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양분과의 통합에 따른 심의안건의 증가물량은 중요안건을 제외한 일반안건을 분별해서 「문화재전문위원 심사회」(가칭) 등을 구성 운영하여 해소할 수 있다(문화재위원회규정 개정 필요).

표 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현황

(단위 : 건)

연도	순수학술발굴	정비목적의 학술발굴	구제발굴	계
2000	47	31	241	319
2001	21	82	366	469
2002	14	91	493	598
2003	25	91	589	705
2004	30	100	869	999
계	137	395	2,558	3,090

문화재제도분과 폐지

문화재제도분과는 문화재 정책,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분장으로써 문화재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폐지하고, 시민정책자문단 또는 정책평가단 유형의 행정적 차원에서 구성·운영함이 효율적일 수 있다.

2. 위원 위촉기준

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은 그 구성원인 위원의 면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재위원회 조직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적절히 부응하는냐는 위원의 질적 구성면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규정 제2조 제2항에는 위원은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2. 5. 6 개정되었다.

그 동안 위원위촉 기준으로 1960년 11월 10일 제정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국무령령 제92호)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의 권위자’ 라고 명문화되어 40여 년을 일관해 왔던 조항이 이때의 개정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소박하게 바뀐 것이다.

문화재 자체에서 연상되는 고상한 것, 고귀한 것, 오래된 것, 희귀한 것 등이 의미하는 「덕망」, 「높은」, 「권위자」라는 용어가 삭제된 점은,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적 사회조류에 따른 용어의 변화로 이해된다.

21세기에 들어서서 개방화, 민주화 시책으로 국정전반에 걸쳐 참신한 신진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겠다. 광복 60년이 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은 전문가의 연령도 젊어졌고 인적자원도 넓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대 위원의 연령대별 분포상황을 보면, 위촉기준 개정 전까지는 위원 평균연령이 61.9세(최근 20년간)이며 2003년 59.2세, 2005년 59.6세로 낮아져 50대에 진입하여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 및 정보의 혁신적 발달로 인하여 전문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문분야와 전문학술기관도 고도로 세분화되고 있어서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많은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상황이다. 전문성의 세분화 및 전문가의 증가로 인하여 노령층에 대한 배려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재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노령층을 의식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나, 문화재 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함께 오랜 경륜이 필수요소임을 감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학문의 전문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문에 연령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란 있을 수 없다.

위원위촉기준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연령이다. 연령은 자연적인 것인가 사회적 것인가고 논의가 있지만, 연령은 생물학적 연령에서 출발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적 연령으로 귀결된다. 생물학적 연령 이외에 다른 사회적 속성들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연령은 생물학적 특질의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차별화된 대우를 받는 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불평등일 수 있다.

위원들이 최신 첨단분야의 전문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재 정책이나 문제점을 심의하는데 적합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단순한 전문지식이기 보다는 문화재정책과 문화위원회에 적합한 전문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덕망이 높고 권위가 저절로 행사될 수 있는 원로급 인사의 전문지식이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행정관청이 분야별 인사를 직접 발굴하기 위하여 수많은 분야의 전문직 인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행정기관과 접촉이 빈번하고 면식이 많은 유력인사 위주로 위촉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의 확보’ 라는 합의제 본래의 취지를 흐리게 한다는 비난이 있다. 그러므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관청이 해당 전문분야의 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고 동시에 위촉대상 인사별 최근의 저술 실적과 활동상 등을 공식적으로 파악한다면 행정기관이 자의로 위촉한다는 비난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행정관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위촉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이며 품의제(稟議制)에 의한 결재과정에서 이른바 게이트 키핑(Gatekeeping)¹⁶⁾을 거치는 소수 행정관료(Gatekeepers)의 정적(情的) 감정에 따라 위촉유무가 결정될 위험요소가 있기에 신뢰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위촉기준은 전문성의 깊이로 인해 문화재위원회의 권한은 확장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의 권위와 명예는 원로급 위원 시절보다는 못하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탁월한 경륜을 지닌 원로급은 위원회 밖의 전문가에 절대적 지지 내지 카리스마가 있었으나 오늘날의 위원회는 의결결과에 절대적 지지가 부족하여 냉소적일 경우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합의제 기구가 갖는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설득력 있는 게 아닌가 싶다.

16) 차배근, 1985,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상)』, 세영사, pp.219~221: 297. ※뉴스의 선택은 뉴스의 가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며 선정과정에서 많은 「손」들(Gatekeepers:결재Line)에 의하여 최종 결정된다.[원전 Kurt Lewin, 1947, 『Channels of Group Life』, Human Relations, pp.143~153.]

3. 위원 임기 및 연임 조정

문화재위원의 임기가 없던 1950년대와 임기 4년의 60대를 거쳐 임기 2년으로 정착된 1970년대를 지나 2005년에 이르기까지 25차례에 걸쳐 연인원 1,113명이 위촉되었다. 다른 분과와의 겸임 109명을 제외하면 1,004명이 실질적으로 위촉되었지만 이것도 연임회수(676)를 빼면 순수 자연인으로서의 위원은 총 328명이다.

현행 문화재위원의 임기 2년은 너무 짧다. ‘일반적으로 한 직위에서 자기의 소신을 펴는 기본적인 행위를 구상하고 실행하려면 최소한 2~3년 이상은 같은 직위에 있어야 한다’¹⁷⁾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기가 짧으면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의식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한 해 걸러 위촉하는 임기 2년은 일시적인 기간으로서 첫째 위촉되고 다음해에는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위원 평균연임기간 2.06회(676÷328명)는 약 6년 20일(당초 임기 2년 포함)로서 임기 2년이 짧음을 암시한다. 임기는 위원의 사기(士氣)에 영향을 미친다. 임기 4년은 충분한 활동기간으로 간주되며 또 연임의 기대도 있는 만큼 긍정적 측면의 동기 부여는 만족도 상승을 가져와 위원들의 사기가 높아 질 것이다¹⁸⁾.

임기를 4년으로 늘려 조정한다면 심의의 안정성, 계속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년간 교체율을 살펴보면 1987년(10.3%), 1989년(2.2%), 1991년(8.3%), 1993년(10.2%), 1995년(50.0%), 1997년(12.2%), 1999년(47.3%), 2001년(15.3%), 2003년(59.3%), 2005년(34.1%) 등 최근에 4년 단위로 대폭적인 위원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위원 임기는 4년이라는 추론이 나온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의 정책적 의지에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교체율의 변화이므로 통계의 적합성이나 신뢰성의 확신이 없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4년 간격으로 대폭적인 교체가 위원의 임기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교체 조치는 아님이 분명할진대, 이러한 자연발생적 사건의 상황분석에서 사회법칙의 관행적 행태를 찾아내는 일은 학술적 측면에서 용인되는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임기와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통상적으로 4년으로 하고 있는 나라

17) 박동서, 1980, 「국회사무처 개편방안」, 『행정논총』 제18권 제2호, 서울대행정대학원, p.309.

18) 박동서, 2002, 『한국행정론』, 법문사, pp.513~515. ; Paul Hersey, Kenneth H. Blanchard, Dewey E. Johnson, 1996, 『Management of Organization Behavior—Utilizing Human Resources』, Prentice Hall, pp.77~82, Frederick Herzberg, "Motivation—Hygiene Theory"

가 많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행 위원의 2년 임기를 4년으로 하고 2년마다 정원의 1/2씩을 교체하는 스테거링 텀 제도(Staggering Term System)를 도입하여 2년마다 매년 25% 이하로 위원을 교체한다면 심의의 연속성, 안정성 그리고 참신성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문화재위원이 위촉되기 시작한 1952년부터 2005년까지 53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위촉된 위원 전원에 대한 재임회수를 살펴보면(부록참조), 연임회수가 많은 위원들은 대부분 문화재위원회 설치 초기부터 활동한 이들이다. 당시 상황이 전공집단의 절대다수가 부족하여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전문인력이 적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어 일부 위원의 경우 당해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서 장기간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학문의 발달로 위촉인사의 폭이 넓어졌지만, 1980년대까지 분야별 독보적 인사는 극소수였다. 또한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기에 연임회수가 많아 보일 수도 있다.

앞서 임기분석에서 제시된 임기 4년에 2년마다 25%씩 위원 교체안을 도입한다면 8년 동안 100%가 교체되는 것이므로 임기 4년인 경우 연임은 1차로 제한해야 하는 추론이 나온다.

임기 연임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통상적으로 4년인 나라가 많으며, 대부분 연임규정을 두고 있다.

흔히 세대 차이를 10년 안팎으로 보는 관례가 있듯이 앞서의 추론과 각 국의 예를 종합해 보면, 연임으로 재임하는 기간은 10년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연임 제한은 임기 2년의 경우 4회, 임기 4년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법제화가 고려될 수 있다. 위원 평균연령이 59.6세이므로 총 재임기간을 8년으로 보면 60대에 만료연령이므로 무리가 없다 하겠다.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해야 하는 절실한 현실적 문제가 있다. 현재 연임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 해촉이 예고없이 이루어지므로 해촉 위원은 자신의 하자 때문인지 아니면 유감이 있어서인지 등 의구심으로 해촉 사실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문화재청에 반감을 갖게 된다. 장기 연임한 원로위원은 연령 때문으로 생각되어 학문을 연령과 결부시키는 행정관료의 무지를 탓하기도 한다. 과다연임의 문제점으로는 자연과 학분야의 경우 첨단지식의 활용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다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제한될 우려도 있으며 무사안일의 전례답습적 병폐도 있을 수 있어 합의제기구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학문의 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

4. 전문위원 활용 실태

문화재 전문위원은 문화재위원의 심의 활동을 보좌(補佐)하는 전문직이다. 문화재위원회규정 제9조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200인 이내에서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소속 분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항의 자료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 일각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하기만 하고 조사·연구의 활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문화재청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문화재위원 후보명단으로서의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비난도 있다. 전문위원 위촉은 명예로운 신입장과 같은 성격인데다 문화재위원이 되는 예비단계로 인식되어서인지 외부 신진 전문가는 물론 청(廳)내 학예연구직 등이 전문위원 위촉에 집착을 보이는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다.

위원은 심의의안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시간과 그에 필요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자료의 수집·분석·제공과 의안 검토 보고 등 활동을 통하여 위원들의 심의를 보좌케 함으로써 심의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심의활동에 끼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다.

전문위원은 문화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타당성 여부와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검토 보고된 내용은 대체로 위원회 심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의 의안심의를 보다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능률화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원은 의안을 단지 전문성에 입각해서만 심의에 임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재 환경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전문위원과 또 다른 위원만이 가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전문위원은 문화재위원회에 어떠한 효과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문화재 전문위원의 활용현황을 <표 3>에서 살펴보자.

문화재전문위원 활용률은 1996년 26%, 1999년 36%, 2002년 53%, 2003년 54%로서 최근에는 절반 이상의 인원이 활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문위원의 절반 이하가 활용될 기회가 없는 사유로서는 심의안건에 관련 분야의 안건이 없어 활용할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심의안건이 있음에도 상근 전문위

원과의 전공분야가 중복되어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심의안건에 관련분야가 없었을 확률이 높다.

상근 전문위원과 전공분야가 중복된 비상근 전문위원의 경우는 상근 전문위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심의안건이 많아 분담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제반 여건상 활용되지 못하는 절반 가량의 전문위원은 소외감, 사기 저하, 위원회 불신 등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전문위원이 안건을 조사 검토한 건수는 <표 3>에서 전문위원 1인당 1996년 9.6건, 1999년 6.5건, 2002년 19.8건, 2003년 13.7건으로 나타났다.

상근 전문위원이 안건의 대부분을 조사검토하고 있어서 심한 편중성을 보이고 있다. 상근 전문위원의 활용률은 1996년의 경우 5명(25%)의 인원으로 87%를, 1999년은 7명(19%)의 인원으로 79%를, 2002년은 7명(13%)의 인원으로 74%를, 2003년은 6명(7%)의 인원으로 73%를 조사 검토하고 있다.

표 3. 문화재전문위원 활용현황

[단위 : 명,(건수),%]

연도 분과	1996			1999			2002			2003		
	정원 (명)	활용인원 (조사검토 건수)	활 용 률 (%)	정원 (명)	활용인원 (조사검토 건수)	활 용 률 (%)	정원 (명)	활용인원 (조사검토 건수)	활 용 률 (%)	정원 (명)	활용인원 (조사검토 건수)	활 용 률 (%)
건조물문 화재분과	15	3 (78)	20	15	6 (106)	40	17	11 (329)	65	20	14 (337)	70
동산 문화재 분과	21	2 (4)	10	25	9 (42)	36	24	15 (89)	63	29	14 (81)	48
사적 분과	21	7 (109)	33	18	7 (74)	39	20	14 (658)	70	25	24 (624)	96
무형 문화재 분과	21	11 (22)	52	24	8 (8)	33	22	11 (20)	50	37	20 (34)	54
천연 기념물 분과	10	2 (26)	20	18	6 (23)	33	16	8 (56)	50	25	14 (60)	56

연도 분과	1996			1999			2002			2003		
	정원 (명)	활용인원 (조사검토 건수)	활용률 (%)	정원 (명)	활용인원 (조사검토 건수)	활용률 (%)	정원 (명)	활용인원 (조사검토 건수)	활용률 (%)	정원 (명)	활용인원 (조사검토 건수)	활용률 (%)
매장 문화재 분과	-	-	-	11	1 (6)	9	15	3 (107)	20	18	5 (140)	28
문화재 제도 분과										15	-	-
박물관 분과	9	0 (0)	0	7	5 (12)	7	6	2 (10)	33	8	5 (39)	63
계	97명	25명 (239건)	(평균) 26 %	118 명	42명 (271건)	(평균) 36 %	120 명	64명 (1,269건)	(평균) 53 %	177 명	96명 (1,315건)	(평균) 54 %
1인당 조사검토 건수		9.6건			6.5건			19.8건			13.7건	

* 자료: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분석함.

* 「조사검토건수」는 안전 1건을 전문위원 3인이 합동조사의 경우에는 「3건」으로 산정함.

반면에 비상근 전문위원은 1996년의 경우 15명의 인원으로 13%를, 1999년은 29명이 21%를, 2002년은 47명이 26%를, 2003년은 76명이 27%를 조사 검토하고 있어서 업무량에서 상근 전문위원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3년도도의 경우 상근 전문위원 1인당 평균 160건을 조사·검토하고 있는데 조사기간과 조사지역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다. 특히 개인별의 경우 상근 전문위원 ‘ㅇ’은 335건, ‘ㅈ’은 414건, ‘ㄱ’은 164건 등 엄청난 양을 조사 검토하고 있어 통계 자체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상근 전문위원이 심의안전건의 조사검토가 전업(專業)이라지만 일부 서류상 조사검토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분량이다. 또한 통계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상정안전 이외에 별도로 문화재청 각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상적 업무에도 조사검토 의견을 상당수 제출하고 있어서 그 검토보고 물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상근 전문위원들은 엄청난 분량의 조사검토 업무를 위하여 실제로 토·공휴일 없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근 전문위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면 결국 조사검토가 피상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이들의 조사검토안건이 심의에 대부분 반영되는 점을 겨냥하여 권력화 현상으로 비취질 위험부담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비상근 전문위원은 교수, 연구 등 전업(專業)이 있어서 때와 장소는 물론 자신의 연구 분야 또는 연구 성향과 맞아야 호응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한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비상근 전문위원과의 대면협의를 있어서 시간적·공간적 제약, 행정 메카니즘에 대한 미성숙 및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비능률성, 안전검토의 처리기한, 연속성 문제 등으로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활용에 있어서 여유시간에만 활용이 가능한 비상근 전문위원을 적기에 투입하기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근직이 아니고서는 적기에 조사 검토할 여건의 마련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문화재 전문위원만이 심의안건을 조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의 안건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활용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전문위원 이외에 외부 전문가를 종종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2002년도에 외부 전문가 58명이 230개 안건을 조사 검토하였는데, 이 인원은 문화재전문위원 활용인원(54명)을 능가하는 것으로 문화재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합하여 112명(54+58)이 1,499건(1,269+230)을 조사 검토하였다.

또 2003년도의 경우 76명이 255개 안건을 조사 검토하였는데, 이 인원은 문화재전문위원 활용인원(96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문화재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합하여 172명(96+76)이 1,570건(1,315+255)을 조사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50% 안팎을 상회한다면 굳이 문화재 전문위원 위촉 제도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전문위원·외부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위촉을 위한 증원에 힘쓰는 것이 문화재전문위원 제도의 방향이 아닌가 싶다.

5. 시·도 위원 겸직

시·도문화재위원회는 구성과 운영면에서 극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위원장 선임의 경우 6개 시·도만이 호선(37%)이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부지사, 부시장을

위원장에 임명(63%)함으로써 아직도 전근대적인 관치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도 공무원의 위원장 겸임 실태는 문화재청에서 오래 전부터 민간인 위원장으로서의 교체를 권고하여 온 사안으로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안과제이다.

또한, 시·도 지정문화재의 종류가 4종임에도 불구하고 9개시·도가 2~3개 분과로 문화재 종류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분야의 세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현대 행정의 측면에서 볼 때 문화재 분야별 전문성을 무시하는 무사안일 내지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형식적 운영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위원위촉에 있어서도 분과별 인원은 4~12명(최소/최대)이다. 분과 최소인원 4명인 경우 과반수 참석(3명)에 과반수 의결의 경우 2명이 찬성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만장일치제’라 할 수 있어서 절차민주주의를 간과하고 있으며, 위원회라기보다는 간담회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이와 같이 시·도 문화재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자체 고위관료의 겸직 등 관치적 요소와 과소한 분과에 소수의 분과위원 위촉 등으로 그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시·도 문화재위원으로 겸임 위촉하는 등 한계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겸직 위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건조물문화재분과 6명, 매장문화재분과 5명, 동산문화재분과 4명, 사적분과 4명, 천연기념물분과 2명, 무형문화재분과·근대문화재분과·문화재제도분과 각 1명 등 총 24명으로 전체위원의 21.8%에 이른다.

중앙과 시·도 문화재위원을 겸임한 이들 위원 중에는 시·도문화재위원으로 재임 중에 문화재위원(중앙)으로 위촉되어 본의 아니게 겸임이 된 위원도 있고,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시·도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도 있으며, 전부터 양측 문화재위원을 계속 겸임한 위원도 있고, 겸임된 사실을 알고 시·도에 해촉을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위촉상태에 있는 위원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문화재위원은 명예직이므로 문화재위원회 전체의 명예와 관련되므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중앙과 시·도위원의 겸직은 문화재를 이용한 전문성 권위의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할 윤리적 문제이다.

생각건대 중앙문화재위원의 시·도 위원 겸임은 자신이 신청하고 스스로 심의하는 격이 될 수 있어서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서 도덕적 해이현상이 우려된다. 문화재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기구라는 점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윤리적 문제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심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재위원회 전체의 명예와 관련되므로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6. 위원 권한 한계

우선, 문화재위원의 「조사」기능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재위원이 조사자로 참여한 사건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 자칫 정실(情實)에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법적 체계를 이해하였더라도 자기가 조사하고 스스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조리(條理)에 맞지 않는다는 윤리적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한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분명히 「심의」가 아닌 「조사·심의」임을 밝히고 있어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하여 의안의 「심의」만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의와 관련된 사건을 필요시에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법시행규칙에 문화재위원의 조사에 따른 정실을 방지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 등 전문가 3인 이상 조사 등 조사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이 심의에 임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으로써 조사할 수 있다. 문화재전문위원의 조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조사가 필요하다.

이때의 「조사」는 「확인」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지조사는 소속 전문위원이 수행하고 분과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의 조사는 전문위원의 현지조사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추가적인 확인 사항을 위한 조사로 보아야 한다. 다만, 위원이 조사하는 경우, 인성적(人性的) 측면에서 사회저명인사로서 문화재위원 개인으로서의 윤리적 「인격」도 있고, 문화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체의 윤리적 「권위」도 있는 만큼 여기에서 신뢰성을 찾아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문화재위원들은 자신이 심의한 의안에 대해 사후적 ‘평가·보고’를 받고자 하는 입장의 해석문제이다. 즉,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여하히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가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되는 참모기구라는 점에서 이해하여야 할 사안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 문화재정책을 평가하는 기구가 아니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자문하는 기구이지 문화재정책을 지도·감독하는 상급관청이 아니다. 오로지 심의기구일 뿐이다. 정책을 평가하는 행위는 행정관청에서 자신의 정책결과를 스스로 확인해 보거나 상급관청 또는 감사기관에서 지도·감독·시정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정행위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위원회는 심의 의결결과의 집행에 대해 평가·보

고를 강제할 수 없다. 법리상 자문기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문만 하면 그것으로 종료된다. 자문내용이 반영되든 아니되든 그것은 궁금하겠지만 자문은 자문일 뿐이다. 이것이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엄격한 법리이다.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 국회」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행정부와 국회는 삼권분립에 의거 헌법상 대등한 지위에 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Line)의 자문(Staff)기구이지 대등한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조리상(條理上)에 있어서는 의결결과에 대한 평가보고는 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한 궁금증은 있게 마련이어서 이를 풀어주는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일 수 있다.

나아가 의결사항의 반영결과를 ‘평가·보고’하는 행위는 행정관청의 이른 바 서비스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당해 행정관청에 집행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관청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는 것이 자신이 구성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문화재청은 심의안건에 대한 평가·보고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여타 정책의 효과로 이어지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환류(Feedback)도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심의의 질적 향상을 거두는 상승효과(Synergic Effect)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정책과 모든 업무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책대안의 모색, 심의 또는 의결 그리고 심의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 등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이는 위원들이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정책효과¹⁹⁾를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정부 발표 등 간접적 매체를 통해서만 정책효과를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제의 활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전문적 지식의 활용과 판단이 필요한 특정한 상황이나 부분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문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²⁰⁾.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정책결정에 있어서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위상만을 인지하고 문화재정책 전반에 관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2005년 11월초 감사원(언론보도로 야기되어 본의 아니게 여론화되었지만 감사원의 의견으로 추정되고 있음)의

19) 여기서 위원회의 정책효과란 위원들의 심의활동으로 인하여 초래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20) 위원회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L. Gulick은 위원회제도가 일반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느리며 무책임하고 시간 낭비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이용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위원회는 특별한 상황하에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효용이 있다고 긍정하고 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행정에서의 협의과정도 증대시킨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의 정책을 위원회에 회부함은 낭비적으로 보고 있다.

국보 제1호 재지정 권고 여론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는 확고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후일로 미루는 비켜가는 의결(2005. 11. 14)을 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가 다양한 문화재 분야의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성은 제시할 수는 있어도,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통합차원에서의 국보 제1호의 상징성을 심의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증거한 것이다.

따라서 국보 제1호 재지정 의안은 문화재적 가치의 평가만의 영역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일반 정책적 영역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문화재정책으로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해외유출문화재 현지화정책, 문화재 종합병원 설립 등은 주요정책이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의안화하기가 곤란하다.

이와 같이 문화재적 가치의 심의가 아닌 부문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또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도 문화재위원회의 관심대상이 될 수 없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7. 문화재위원회 위상 정립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정책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로서 법령의 필요적 심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의사결정은 「의결위원회」로 이해될 정도로 문화재정책에 그 동안 대체로 여과없이 반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재위원들은 심의의결에 있어서 당해 행정관청인 문화재청의 정책의지가 무엇인지를 의안을 통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서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정치적·행정적 조정 요청이 가끔 제기되는 관계로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갈등이 있음을 토로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재위원회가 주요 정책적 사항이나 연구·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 등을 직접 조사·심의해야 함에도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수립·추진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는 행정적·의례적 기구로서의 형식적 역할만 수행한다는 극단적 자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정책에 전문적·기술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를 의결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로 격을 높여 위상을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현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소신 있는 확고한 의사결정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

등 문화재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문화재위원회는 의결결과를 가지고 행정관청을 구속할 수 없기에 분명히 의결기구는 아니다. 심의위원회는 법령에 열거된 필요적 심의사항을 반드시 자문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선택적으로 안건을 부의 받는 일반 자문위원회와는 다르다. 심의위원회가 필요적 심의사항을 거치지 않는다 한들 자문에 불과한 심의기구가 행정관청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심의위원회도 일반 자문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

그리하여 문화재위원회는 「의결위원회」나 「행정위원회」로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는 위상 정립 문제가 종종 제시되고 있는 바, 문화재위원회가 어떤 유형의 위원회로 위상이 정립되어야 적절한지 검토 분석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첫째, 문화재위원회가 현행대로 ‘심의위원회’로 있는 경우이다.

문화재정책은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문화재청장이 지게 되며, 문화재위원회는 전문가로 초빙된 자문적 자격으로서 도덕적 책임만 있으므로 심의기구로서 의사결정이 존중받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상 열거한 필요적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문화재청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책임은 도덕적 수준이므로 심의와 관련하여 객관성·전문성을 부담 없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문화재위원회를 ‘의결위원회’로 위상을 높일 경우이다.

현재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 스스로가 의결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수용·반영함으로써 의결위원회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터에 문화재보호법에 “심의”라는 용어를 “의결”로 바뀌어 놓는 이외에 무슨 위상의 변화가 있다 할 것인가이다.

문화재위원회가 의결위원회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문화재청은 선택의 여지없이 법의 규정에 의해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로 이어지게 되므로 문화재청은 한낱 부속 사무기구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함에 있어서 전문성에만 치우쳐 행정의 핵심인 조정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경우 문화재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때 문화재청은 위원 위촉권을 활용하여 위원을 어용화(御用化)할 개연성과 함께 집행부서 직원의 사기저하에 따른 정책집행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문화재정책은 지방향토문화의 핵심으로 상징되어 지역정치적 활용분야로 편입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행정적 조정력 발휘의 요청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위원회는 행정력이 결여된 의결기구형태의 전문성만

으로는 문화재환경을 조정하고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의결위원회는 징계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같이 개인의 잘잘못이나 권리구제(사법부의 전심절차)의 경우에 공정성·민주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서 중립적 의사결정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자문기구이다. 이 의결을 통하여 행정관청의 월권 또는 부작위를 제재하는 힘의 행사에 유용하다. 그러므로 문화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적·학술적 자문기구이므로 의결위원회로는 적합하지 않다.

셋째, 문화재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위상을 정립하는 경우이다.

문화재위원회는 관련 전문분야의 권위자일 것임은 분명하지만, 전문적 지식만으로 문화재정책을 합리적·합목적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보존과 개발과의 조화」라는 현실적 측면에서 막강한 경제개발부처에 대응하여 행정력을 발휘하기에는 학술적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전문가들로서는 감내하기 어렵다. 문화재위원회는 전문성에 치우칠 우려가 많다는 점에서 행정의 이념의 한축인 능률성의 저하로 인하여 문화재환경과의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화재 사안마다 경제논리와 문화재 전문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나날만 계속되어 무엇 하나 해결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많은 갈등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의결효과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 견해는 극단적인 논리가 아니다. 선진국 같이 국민의식이 성숙된 사회에서는 국민 참여가 높아 문화재정책에 우군으로 작용할 지원 단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산권 침해에 연연하는 국민적 수준과 여전히 경제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수준을 고려할 때 문화재위원회는 지원군 없는 고군분투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

위원회제도가 합의제기구의 조정과 통합이라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 대부분이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기보다는 행정환경에 미숙한 결과 불합리한 결정으로 연결되어 사회적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행정위원회는 어떤 특수한 행정분야와 관련된 현안과제나 분쟁 등을 재결하는 기능을 주로 행사하므로 행정가와 비슷한 행정적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들 전문가는 이미 행정·경영분야나 유사분야에서 행정력을 습득했다는 장점이 있기에 나름대로 행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어려움 없이 합의제 기구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행정위원회의 하나인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國史)에 관한 특정분야의 순수학술연구기관이지 문화재청과 같이 국민의 재산권 문제 등 민원사항을 풀어나가는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문화재정책은 정책 내용이 고도의 학술 연구적 성격을 지니는 특수정책일 뿐이지, 그 정책결정과정의 영역은 일반부처와 다를 바 없는 행정영역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위원회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위원회는 어떤 사회적 이슈를 정치적 중립적 측면과 행정적 조정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신분의 위원으로 독립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목적 달성 후에는 자동 해체되는 일몰제(日沒制)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선진국인 영·미의 민간위원회 중심의 정책이나 유럽 대륙계의 국가위원회 중심의 정책선례를 기대하겠지만, 그것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위원회제도의 역사가 100여년이 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룩된 서구의 산물로서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이러한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선진국의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토양이 그 선진국 토양에 가깝게 이르렀을 때에 가능하다. 일찍이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정치나 제도는 그 나라의 풍토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하였음을 시사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서구의 위원회의 성격은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자문기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이들 자문적 위원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자문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 권능을 인정받고 있어 행정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정책집행은 역시 위원회 형태의 행정관청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위원회는 특정분야의 현안관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독립된 행정관청으로서 스스로 의사결정과 집행을 하는 합의제 기구이다. 그러나 문화재정책은 연구적 성격이 강한 학술분야의 특수정책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고 전국적 규모에 걸친 문화재보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정책의 범주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문화재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서 문화재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넷째, 위원회제의 위상정립을 주장할 때 제기되는 문제가 전문성의 권위와 행정가의 상식수준의 보편적 시각간의 갈등상태의 폐해를 들고 있다.

이는 전문성의 권위가 행정가의 상식적 보편적 시각 속에 눌러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시각에서 제기된 것인데, 행정가는 심의안건의 작성능력이나 의제의 선정능력 등에서 오랜 경험을 지닌 행정분야의 전문가로서 균형적 감각과 안정성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전문성은 모두 옳다. 다만, 그 전문성은 특정분야의 영역으로 전체에서 볼 때 일부분에 속하므로 그것을 전체의 대표성으로 채택할 될 수 없다. 정책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각 분야 전문성을 공통 분모적으로 조정해서 정책화한다. 이때 전문가 자신의 전문성이 마치 무시되는 것 같이 보일 뿐이다.

행정관료는 장기간에 걸친 업무수행의 결과 행정의 전문성을 지니며, 오랜 경험은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기함으로서 국민에게 신뢰성을 주게 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존치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는 법령의 필요적 심의사항의 열거로 인하여 어느 정도 정책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양측 모두가 유연성(Flexible)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로 문화재보호법령에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결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의결위원회의 단점인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의결위원회의 장점을 반영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V. 맺음말

오늘날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불을 겨냥하면서 19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민주화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일변도의 와중에서 행정은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우선시 하였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동안 행정에 있어서 희생되어 왔던 민주성을 회복시켜 행정의 이념인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어느 나라도 양자의 완전한 조화를 달성한 예가 없을 만큼 행정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기필코 달성해야만 하는 행정의 궁극적 이념임에는 틀림없다. 행정에 있어서 민주성을 회복시켜 능률성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합의제기구로서의 위원회제도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민족문화유산의 보호라는 명백한 목표를 지니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제 조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위원회는 정부수립 후 민주행정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그 전문성을 통하여 문화재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재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분야의 모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현대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대기술민주주의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그동안 여러 정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구성·위촉되어 왔음은 정치적 영향력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문화재정책의 자문임무를 견고히 수행함으로써 학술자문기구로서의 위상 확립에 기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정책의 전문적 심의역할 이외에도 문화재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중지(衆智)를 모으고 정보의 분배 및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화기능을 부수적으로 창출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문화재를 최상의 개념으로 높이 놓더라도 개발과 재산권 보호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상대적 개념 정립하에서 문화재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제도, 재개발도 가능하다는 변화의 순리를 인정하는 마음 자세로 임할 때 합의제기구의 특성인 조정과 통합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변론자로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원의 제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아이디어 제공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안의 도출을 유도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여 역사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재위원은 그 시대에 있어서 덕망과 학식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식들이며 우리 민족 문화유산을 헌신적으로 지킨 파수병이요 공로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유산 보호의 마지막 보루임을 인식하고 그 보루를 잘 지켜주는데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²¹⁾.

앞으로 문화재위원회는 위상 강화와 함께 명예와 권위가 한층 높아져서 문화재정책의 「대변자」로서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의 중추적 기관으로 거듭 발전하길 빌어마지 않는 바이다.

21) 정재훈, 1969, 앞의 논문, p.7.

참 고 문 헌

- 권영성, 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
박동서, 2002, 『한국행정론』, 법문사.
박우순, 1999, 『조직관리론』, 법문사.
오세탁, 1992, 『문화재를 향유한다』, 책만드는 집.
유 훈, 2000, 『행정학원론』, 법문사.
윤우곤, 1996, 『조직관리학』, 다산출판사.
이광윤 외, 2002, 『최신행정법론』, 법문사.
장호수, 2002,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정문교, 2000,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정정길, 1999,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차배근, 1985, 『커뮤니케이션학개론(상)』, 세영사.
채경석 외, 1999, 『정책학원론』, 대왕사.

◆ 학회지 등

- 김주섭, 1976, 「위원회의 기능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오세탁, 1982, 「문화재보호법 연구-문화재향유권의 법리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이명재, 1996, 「한국행정상 위원회제도의 실태분석」, 『상명대 사회과학연구』 제9호.
정홍의·김호섭, 1991,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한국 행정학보』 제25권 제2호.
- 국립문화재연구소, 1965~2004, 『문화재』 제1호~제37호.
문화재관리국, 1985, 『문화재관리 실무편람』.
문화재청, 1988~2005, 『문화재 연감』.
문화재청, 1952~2004,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Abstract

A Basic Analysis on the Oper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Kim, Hong-real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s an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carrying out examination and deliberation 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cultural propertie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Korean cultural properties. It was found to produce and execute policies on cultural properties, which involves in-depth investigation and consultation of experts in the fields of cultural properties. In here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olicy-making on Korean cultural properties.

Governmental committees in Korea are largely divided into consultation committees and administrative commissions. Consultation committees are subdivided into consultation, deliberation and legislative committee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Bureau of Cultural Properties in October 1961, and enacted provisions (as a presidential decree) on March 27, 1962, by the Cultural Properties Act, January 10, 1962.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as opened as a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overs the entirety of cultural properties, including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n which currently 120 members serve in 9 subcommittees. The committee member hold two years membership.

This analysis contains a frame and scheme of the committee, function and statue of the current operation and study on role of a deliberation committee.

Keyword : function, role, position, scheme of the committee, a deliberation committee.

1. 문화재위원 재임회수 현황(1952~2005)

재임회수	위원 명단	재임인원
16회	임동권	1
15	김원용, 예용해, 황수영	3
14	원병오	1
13	성경린, 이두현, 진홍섭	3
12	이창복, 임창순, 전상운	3
11	박만규, 최영희, 김훈수, 안휘준, 정양모	5
10	정영호, 정창희, 최기철	3
9	최희순, 주남철, 맹인재	3
8	김천홍, 신찬균, 안봉원, 한병삼, 석주선	5
7	김유선, 김정기, 김철준, 문명대, 박헌봉, 유희경, 윤무병, 윤장섭, 이은상, 이태녕, 이홍직, 정병호, 김동욱, 장경호, 한영우	15
6	김상기, 김창환, 박영석, 손보기, 손치무, 이광로, 이민재, 이선근, 임경빈, 장주근, 정문기, 조명기, 천혜봉, 김동현, 김상욱, 이인규	16
5	강우방, 김두중, 김수진, 김은영, 김재원, 김준민, 윤일병, 이혜구, 전상린, 홍윤식, 정재훈	11
4	고병익, 김수근, 김윤식, 안승주, 우한정, 원종관, 윤동석, 이상백, 임석재, 장사훈, 정동오, 정인국, 허선도, 홍시환, 강경숙, 김리나, 김종규, 송준임, 이동환, 정영화, 최승희	21
3	-	20
2	-	81
1	-	137
계		328명

2. 문화재위원 연도별 위촉명단(1952~2005)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임시보존위원회>

연도	제1부	제2부
1952 (33명) (겸임3)	허증수(의장,차관) 김재원, 전형필 고희동, 손재형 이병도, 이상백 이균상, 조명기 이홍직, 황수영 임명직, 지승만 서재식, 신구영 이종욱, 오종식 최범술, 권상로 이종욱(스님) (20)	최종천, 김준민 최기철, 강영선 이민재, 박만규 박동길, 손치무 김도태, 남태향 허증수(겸) 임명직(겸) 지승만(겸) (13)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연도	제1부	제2부
1955 (20명)	고희동(전기의장) 김상기(부장) 김재원, 전형필 김양선, 손재형 이병도, 이상백 이균상, 이용희 이홍직, 황수영 (12)	정태현(후기의장) 박동길(부장) 최기철, 조복성 이민재, 박만규 손치무, 김도태 (8)

<문화재보존위원회>

연도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1960 (40명)	고희동(위원장), 김상기(전부) 김재원(전부), 이홍직(분장) 김경승, 장우성, 전형필 김기승, 김두중, 신석호 김원용, 김종영, 김중업, 서정덕, 유홍열, 이순석, 황수영 (17)	정태현(분장), 김옥준, 김훈수 박만규, 정창희, 최기철 손치무, 정문기, 정영호 (9)	현철(분장), 김천홍, 박헌봉 석주선, 설창수, 이근성 이두현, 이주환, 이해구 임석재, 장사훈, 장주근 최상수, 김경옥 (14)

<문화재위원회>

연도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1962 (17명)	김상기(위원장), 이홍직(분장) 김두중, 김중업, 황수영 김재원, 김원용, 이상백 (8)	임석재(전부), 이해구 석주선, 김천홍 (4)	박만규(전부, 분장), 최기철 손치무, 정문기, 이민재 (5)
1963 (21명)	김상기(위원장), 이홍직(분장) 김두중, 김중업, 황수영 김윤기, 김재원, 김원용, 이상백 (9)	임석재(분장), 김천홍, 석주선 성경린, 예용해, 이해구, 박헌봉 (7)	박만규(분장), 손치무 최기철, 이민재, 정문기 (5)

※ 보기 : 위장(전체 위원장), 전부(전체 부위원장), 분장(분과위원장), 의장(전체 의장), 부장(부장)

※ (~겸)는 겸직분과 표시임

연도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1966 (25명)	김상기(위장), 이홍직(분장) 김원용, 배길기, 배림 김윤기, 정인국, 조명기 최희순, 진홍섭 (10)	임석재(분장), 김천홍 석주선, 성경린, 예용해 이혜구, 박헌봉, 임동권 홍현식 (9)	박만규(분장), 이민재 강영선, 최기철, 손치무 원병오 (6)
1969 (27명)	김상기(전부,분장) 이홍직, 김원용, 김유선 손보기, 진홍섭, 최희순, 홍이섭, 김윤기, 조명기 (10)	이선근(위장,분장),임석재(분장) 성경린, 박헌봉, 김천홍 양재연, 임동권, 김기석 석주선, 예용해 (10)	이민재(전부,분장), 박만규, 정문기, 최기철, 원병오, 이창복, 이은상 (7)
1971 (26명)	이선근(위장), 조명기(분장) 김유선, 최희순, 정인국 임창순, 이기백, 손보기 진홍섭 (9)	양재연(분장), 성경린 박헌봉, 임동권, 예용해 김천홍, 석주선, 이두현 장사훈, 유기용 (10)	박만규(분장), 최기철, 원병오 이창복, 이은상, 오계철 김훈수 (7)
1973 (28명)	이선근(위장, 분장) 조명기, 김원용, 김철준 황수영, 김유선, 최희순 정인국, 임창순, 진홍섭 (10)	양재연, 성경린(분장) 박헌봉, 장사훈, 이춘영 임동권, 예용해, 석주선 이두현, 김천홍 (10)	박만규(분장), 최기철, 원병오, 이창복, 이은상 오계철, 김훈수, 김봉균 (8)
1975 (28명)	이선근(위장, 분장) 조명기, 김원용, 황수영 김유선, 최희순, 정인국 임창순, 진홍섭, 김철준 (10)	성경린(분장), 박헌봉, 임동권, 강한영 예용해, 김천홍, 석주선 이두현, 장사훈 이춘녕 (10)	박만규(분장), 최기철 원병오, 이창복, 이은상 오계철, 김훈수, 김봉균 (8)
1977 (16명)	이선근(위장, 분장) 김두중, 김원용, 황수영 최희순, 정경운 (6)	예용해(분장), 이두현 임동권, 김동욱, 김기수 (5)	박만규, 정문기(분장) 이은상, 원병오, 정창희 (5)
1979 (19명)	이선근(위장) 김두중(분장), 김원용 황수영, 최희순, 김수근 임창순, 최영희, 김철준 (9)	예용해(분장), 이두현 임동권, 김동욱, 이혜구 (5)	정문기(분장), 이은상 원병오, 정창희, 이창복 (5)
1981 (29명)	황수영(전기위장) 김원용(분장), 고병익, 이태영, 이기영, 김수근 김철준, 윤무병, 윤장섭 임창순, 전상운, 진홍섭 천혜봉, 최영희, 최희순 (15)	김동욱, 성경린(분장) 예용해, 유희경, 이두현 임동권, 정병호 (7)	이승녕(후기위장, 분장), 김훈수, 이창복, 원병오, 정창희, 이은상, 이일구, (7)

연도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제5분과
1983 (29명)	김원용(위원장,분장) 고병익, 김수근 김철준, 황수영 윤무병, 윤장섭 이태녕, 박영석 임창순, 전상운 진홍섭, 천관우 천혜봉, 최희순 (15)	성경린(분장) 김동욱, 예용해 유희경, 이두현 임동권, 정병호 (7)	이창복(분장) 김창환, 김훈수 원병오, 이일구 임경빈, 정창희 (7)	-	-
1985 (39명)	윤장섭(분장) 김수근, 김유선 김정기, 맹인재 정영호, 주남철 (7)	진홍섭(위원장,분장) 임창순, 황수영 천혜봉, 이태영 전상운, 정양모 안휘준, 문명대 (9)	김철준(전부,분장) 김원용, 윤무병 박영석, 최영희 한병삼, 허선도 (7)	성경린(분장) 유희경, 김동욱 이두현, 임동권 정병호, 예용해 장주근 (8)	이창복(전부,분장) 이일구, 김창환 정창희, 임경빈 원병오, 김훈수 송지영 (8)
1987 (45명)	윤장섭(분장) 이태녕, 주남철 이광로, 김정기 맹인재, 정영호 (7)	진홍섭(위원장,분장) 임창순, 황수영 천혜봉, 전상운 정양모, 안휘준 문명대, 윤동석 이지관, 홍윤식 (11)	김철준(분장) 김원용, 윤무병, 최영희, 박영석, 한병삼, 허선도, 손보기, 오휘영 (9)	성경린(분장) 유희경, 김동욱 이두현, 임동권 정병호, 예용해 장주근, 신찬균 (9)	이창복(분장) 김창환, 정창희 임경빈, 원병오 김훈수, 김준민 홍시환, 안봉원 (9)

연도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5분과	박문관분과
1989 (57명) (겸임9)	윤장섭(전부) 이태영 이광로 김정기 맹인재 정영호 주남철 (7)	임창순(위원장) 황수영 진홍섭 천혜봉 전상운 정양모 안휘준 문명대 윤동석 이지관 홍윤식 (11)	최영희(분장) 김원용 윤무병 박영석 한병삼 허선도 손보기 오휘영 이기백 장경호 (10)	성경린(분장) 유희경 김동욱 이두현 임동권 정병호 예용해 장주근 신찬균 (9)	이창복(전부) 김창환 정창희 임경빈 원병오 김훈수 김준민 홍시환 안봉원 (9)	이경성(분장) 김원용(3겸) 한병삼(3겸) 장주근(4겸) 진홍섭(2겸) 문명대(2겸) 안휘준(2겸) 전상운(2겸) 김훈수(5겸) 임경빈(5겸) (11)

연도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5분과	박문관분과
1991 (57명) (겸임8)	윤장섭(분장) 주남철 이태영 이광로 맹인재 정영호 김정기 (7)	임창순(위원장) 황수영 진홍섭 천혜봉 전상운 정양모 안휘준 문명대 윤동석 서병식 홍윤식 (11)	손보기(분장) 김원용 윤무병 최영희 박영석 한병삼 허선도 오휘영 장경호 안승주 (10)	성경린(분장) 유희경 이두현 임동권 정병호 예용해 장주근 신찬균 강한영 이광규 (10)	이창복(분장) 김창환 정창희 임경빈 원병오 김훈수 김준민 홍시환 안봉원 이영로 (10)	한병삼 (3겸,분장) 김원용(3겸) 문명대(2겸) 안휘준(2겸) 전상운(2겸) 장주근(4겸) 임경빈(5겸) 김훈수(5겸) 이경성 (9)
1993 (58명) (겸임8)	이광로 (전부,분장) 윤장섭 이태영 김정기 맹인재 정영호 주남철 (7)	진홍섭 (분장, 위원장) 임창순 전상운 정양모 안휘준 문명대 윤동석 서병식 홍윤식 이춘희 강우방 (11)	한병삼(분장) 윤무병 최영희 박영석 손보기 장경호 안승주 안봉원 윤세영 한영우 윤내현 (11)	성경린(분장) 유희경 이두현 임동권 정병호 예용해 장주근 신찬균 강한영 이광규 (10)	김준민 (전부,분장) 이창복 김창환 정창희 임경빈 원병오 김훈수 홍시환 이영로 (9)	정양모 (2겸, 분장) 문명대(2겸) 안휘준(2겸) 이춘희(2겸) 전상운(2겸) 장주근(4겸) 임경빈(5겸) 김훈수(5겸) 임영방 이구열 (10)
1995 (58명) (겸임9)	이광로 (분장, 전부) 김정기 김동현 김은영 맹인재 문영대 주남철 (7)	임창순 (분장, 위원장) 안병희 전상운 정양모 안휘준 정영호 김상옥 홍윤식 이춘희 강우방 (10)	한병삼 (분장) 임효재 최영희 이원순 손병헌 장경호 안승주 정동오 윤세영 한영우 김유선 (11)	임동권 (전부, 분장) 황병기 유송옥 조동일 김성수 조흥운 신찬균 강찬균 윤용이 (9)	안봉원 (분장) 전상린 김윤식 윤일병 김수진 김태욱 우한정 오창영 원종관 이인규 (10)	정양모 (2겸,분장) 윤세영(3겸) 안휘준(2겸) 이춘희(2겸) 전상운(2겸) 김성수(4겸) 오창영(5겸) 김정기(1겸) 김윤식(5겸) 이구열 임영방 (11)

연도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	5분과	6분과	박문관분과
1997 (66명) (겸임11)	이광로 (분장, 전부) 김동현 김은영 김정기 맹인재 정영호 주남철 (7)	고병익 (분장, 위장) 강우방 김리나 김상옥 문영대 심우준 안병희 안휘준 이춘희 전상운 정양모 (11)	최영희 (분장) 김일진 김정배 안승주 이원순 장경호 정동오 정재훈 한영우 (9)	임동권 (분장) 강찬균 김성수 김옥진 김종태 민길자 신찬균 이규태 조홍윤 황병기 (10)	인봉원 (분장) 김수진 김윤식 오창영 우한정 윤일병 원종관 이인규 전상린 홍성각 (10)	한병삼 (분장, 전부) 김동현(1겸) 김유선 김종철 손병헌 윤세영 임효재 장경호(3겸) (8)	정양모 (분장, 2겸) 김성수(4겸) 김윤식(5겸) 김정기(1겸) 안휘준(2겸) 오창영(5겸) 윤세영(6겸) 이구열 이춘희(2겸) 임영방 전상운(2겸) (11)
1999 (72명) (겸임13)	정영호 (분장, 전부) 김동현 김은영 김일진 맹인재 신현식 윤복자 주남철 (8)	고병익 (분장, 위장) 강경숙 강우방 김상옥 안휘준 이난영 이동환 이수건 전상운 정양모 최승희 허영환 (12)	최영희 (분장) 김염자 김일진(1겸) 김정배 이원순 정동오 정옥자 정재훈 조유진 한영우 (10)	이성천 (분장) 강경숙(2겸) 곽대웅 김선희 민길자 박영규 백대웅 서연호 신찬균 심우성 정해조 이종철 허영일 (13)	윤일병 (분장) 김수진 김윤식 송준임 안봉원 우한정 원종관 이인규 전상린 (9)	한병삼 (전부, 분장) 김동현(1겸) 김병모 심봉근 이기동 정영화 조유진(3겸) 최몽룡 최숙경 (9)	정양모 (분장, 2겸) 김병모(6겸) 김윤식(5겸) 김종규 송준임(5겸) 안휘준(2겸) 이종철(4겸) 전상운(2겸) 주남철(1겸) 최만린 최승희(2겸) (11)
2001 (72명) (겸임13)	김일진(분장) 김동현 김은영 맹인재 윤복자 정영호 주남철 홍성목 (8)	안휘준(분장, 전부) 강경숙 강우방 김리나 김상옥 이난영 이동환 이수건 전상운 정양모 최승희 (11)	최영희(분장, 위장) 김광수 김일진(1겸) 심봉근(6겸) 이만열 이성무 장경호 정동오 정옥자 정재훈 조유진 한영우 (12)	심우성(분장, 전부) 강경숙(2겸) 곽대웅 김지희 백대웅 서영호 신찬균 이성천 이종철 임돈희 정해조 허영일 (12)	윤일병(분장) 김수진 김윤식 송준임 안봉원 원종관 우한정 이인규 전상린 (9)	최숙경(분장) 김동현(1겸) 김병모 심봉근 이기동 조유진(3겸) 정영화 정정원 지건길 최몽룡 (10)	정양모(분장, 2겸) 김윤식(5겸) 김병모(6겸) 김종규 송준임(5겸) 이종철(4겸) 안휘준(2겸) 주남철(1겸) 전상운(2겸) 최만린 (10)

연도	건조물 문화재분과	동산문화재 분과	사적 분과	무형문화재 분과	천연기념물 분과	매장문화재 분과	박물관분과	문화재제도 분과
2003 (102명) (겸임16)	김동현 (분장) 김동옥 김봉건 김수진 김은영 박언곤 장충식 천병옥 최석원 최효승 홍성목	안휘준 (전부, 분장) 강경숙 김리나 김상옥 남문현 유홍준 윤용이 이건무 이동환 이오희 장충식 (건조겸) 최승희 홍선표	한영부 (전부, 분장) 고혜령 김동옥 (건조겸) 김정동 노중국 이성무 장석하 전형택 정영화 정재훈 조유전 최규성	이성천 (분장) 고승관 김명자 김지희 박범훈 박성실 양선희 윤 근 윤미용 이종철 이필영 임돈희 임학선 전경수 최래옥 추원교	이인규 (분장) 구대회 김수진 (건조겸) 김익수 김학범 송준임 양승영 윤일병 이경준 이광춘 이은복 이흥식	정영화 (분장, 사적겸) 김동현 (건조겸) 배기동 심정보 이강승 이건무 (동산겸) 이인숙 이현혜 임효택 조유전 (사적겸) 최병현	정양모 (위장, 분장) 강래희 김봉렬 김종규 박성래 박현수 심정자 안휘준 (동산겸) 오용자 이강승 (매장겸) 지순임	김여수 (분장) 김동현 (건조분장, 매장겸) 안휘준 (동산분장, 박물관겸) 한영우 (사적분장) 이성천 (무형분장) 이인규 (천기분장) 정영화 (매장분장) 정양모 (위장, 박물관분장) 박은정 서승완 송쌍중 이규방 이영옥 이인호 임승남 황윤원
	(11)	(13)	(12)	(16)	(12)	(11)	(11)	(16)

연도	국보지정 분과	건조물 문화재분과	동산문화재 분과	사적 분과	무형문화재 분과	천연기념물 분과	매장문화재 분과	근대문화재 분과	문화재 제도분과
2005 (129명) (겸임19)	안휘준 (위장,분 장,동산,제 도겸) 박언곤 (건축,제 도겸) 한영우 (사적,제 도겸) 김광언 (무형,제 도겸) 이인규 (천기,제 도겸) 정징원 (매장,제 도겸) 이만열 (근대,제 도겸) 김동현 안병희 이건무 (동산겸) 전상운 정양모 정재훈 진홍섭	박언곤 (전부,분 장,국보,제 도겸) 김동욱 (사적겸) 김봉건 (매장겸) 김봉렬 박강철 윤홍로 이리형 이상해 장경호 장석하 (사적겸) 조성룡 최석원	안휘준 (위장,분 장,국보,제 도겸) 강경숙 김리나 김상욱 박상국 박성래 윤용이 이건무 (국보겸) 이동환 이오희 이태호 정우택 조선미 최승희	한영우 (분장,국 보,제도겸) 김동욱 (건축겸) 김성우 노중국 심정보 안병욱 이강승 (매장겸) 장석하 (건축겸) 전형택 정기용 정기호 정영화 채상식 최기수	김광언 (분장,국 보,제도겸) 권오성 김명자 김철호 박대순 박성실 박호성 백영자 양선희 윤 근 이필영 임돈희 임재해 조홍동 최태현	이인규 (분장,국 보,제도겸) 구태회 김덕현 김익수 김정률 김학범 박규택 손인석 송준임 양승영 이광춘 이은복 이창복 이흥식 조도순 함규황	정징원 (전부,분 장, 국보,제도 겸) 김봉건 (건축겸) 김세기 나선화 박영철 이강승 (사적겸) 이인숙 이종욱 이청규 이현혜 지건길 최병현	이만열 (분장,국 보,제도겸) 구민세 권영민 김영태 김용수 김윤수 김정동 남문현 박현수 서중석 심지연 이 재 이건용 이용관	안휘준 (위장,분 장,국보,동 산겸) 박언곤 (국보,건 조겸) 한영우 (국보,사 적겸) 김광언 (국보,무 형겸) 이인규 (국보,천 기겸) 정징원 (국보,매 장겸) 이만열 (국보,근 대겸) 권인혁 김정현 김종규 김종민 김중양 서승완 이규방 이삼열 이영욱 임승남 최용선
	(14명)	(12명)	(14명)	(14명)	(15명)	(16명)	(12명)	(14명)	(18명)
계 1,113명 (겸임 109명 포함)									

3. 문화재위원 개인별 위촉현황(1952~2005)

문화재위원 명단(생년/전공/위촉년도(분과명, 겸임분과명))	
ㄱ	<p>강경숙(姜敬淑) 40 한국미술사(도자사) 99(2,4) 01(2,4) 03(동산) 05(동산)/ 강래희(姜來熙) 51 영문학(문화연구) 03(박)/강영선(姜永善) 52(2부) 66(3)/강우방(姜友邦) 41 한국미술사 93(2) 95(2) 97(2) 99(2) 01(2)/ 강찬균(姜燦均) 38</p> <p>전통공예 95(4) 97(4)/ 강한영(姜漢永) 13 민속음악 75(2) 91(4) 93(4)/ 고병익(高柄翊) 24~2004 동양사 81(1) 83(1) 97(2) 99(2)/ 고승관(高承觀) 43 장식공예 03(무형)/ 고혜령(高惠玲) 46 한국중세사 03(사적)/ 고희동(高羲東) 미술 52(1부) 55(1부) 60(1)/ 곽대웅(郭大雄) 41 공예 99(4) 01(4)/ 구민세(丘民世) 47 토목구조 05(근대)/ 구태희(具太會) 44 동물학 03(천연) 05(천연)/ 권상로(權相老) 1879~65 불교사 52(1부)/ 권영민(權寧珉) 48 국문학사 05(근대)/ 권오성(權五聖) 41 민속음악 05(무형)/ 권인혁(權仁赫) 37 국제 05(제도)/ 김경승(金景承) 15~92 조각 60(1)/ 김경옥(金京鈺) 연극 60(3)/ 김광수(金光洙) 37 고대중세사 01(3)/ 김광연(金光彦) 39 생활문화 05(무형)/ 김기수(金琪洙) 국악 17~86 77(2)/ 김기석(金基錫) 05~74 교육철학 69(2)/ 김기승(金基昇) 09~ 서예 60(1)/ 김덕현(金德鉉) 49 역사지리학 05(천연)/ 김도태(金道泰) 1891~56 지리학 52(2부) 55(2부)/ 김동욱(金東旭) 22 북식 77(2) 79(2) 81(2) 83(2) 85(4) 87(4) 89(4)/ 김동욱(金東旭) 47 건축사 03(사적,건조) 05(건조물,사적)/ 김동현(金東賢) 37 건축사 95(1) 97(1,6) 99(1,6) 01(1,6) 03(매장,제도,건조) 05(국보)/ 김두중(金斗鍾) 1896-1988 서지학 60(1) 62(1) 63(1) 77(1) 79(1)/ 김리나(金理那) 42 불교조각(한국미술사) 97(2) 01(2) 03(동산) 05(동산)/ 김명자(金明子) 45 세시풍속 03(무형) 05(무형)/ 김병모(金秉模) 40 고고학 99(6,박) 01(6,박)/ 김봉건(金奉建) 56 한국건축사 03(건조) 05(건조,매장)/ 김봉균(金奉均) 20 지질 73(3) 75(3)/ 김봉렬(金奉烈) 58 건축사 03(박) 05(건조)/ 김상기(金庠基) 01-77 동양사 55(1부) 60(1) 62(1) 63(1) 66(1) 69(1)/ 김상옥(金商玉) 47 불교학 95(2) 97(2) 99(2) 01(2) 03(동산) 05(동산)/ 김선풍(金善豊) 40 민속학 99(4)/ 김성수(金聖洙) 34 전통공예 95(4,박) 97(4,박)/ 김성우(金聖雨) 50 전통건축 05(사적)/ 김세기(金世基) 50 고고학(고분) 05(매장)/ 김수근(金壽根) 31 건축 79(1) 81(1) 83(1) 85(1)/ 김수진(金洙鎭) 39 지질학 95(5) 97(5) 99(5) 01(5) 03(천연,건조) 김양선(金良善) 07~70 고고학 55(1부)/ 김여수(金麗壽) 36 국제문화 03(제도)/ 김엽자(金禾念子) 40 중국사 99(3)/ 김영태(金榮泰) 47 건축 05(근대)/ 김옥준(金玉準) 16 지질학 60(2)/ 김옥진(金玉振) 36 민속무용 97(4)/ 김용수(金龍洙) 47 농학 05(근대)/ 김원용(金元龍) 22~93 고고학 60(1) 62(1) 63(1) 66(1) 69(1) 73(1) 75(1) 77(1) 79(1) 81(1) 83(1) 85(3) 87(3) 89(3,박) 91(3,박)/ 김유선(金裕善) 24 보존과학 69(1) 71(1) 73(1) 75(1) 85(1) 95(3) 97(6)/ 김윤기(金允基) 04년 63(1) 66(1) 69(1)/ 김윤수(金潤洙) 36 미학 05(근대)/ 김윤식(金潤植) 34 식물분류학 95(5,박) 97(5,박) 99(5,박) 01(5,박)/ 김은영(金殷泳) 37 고분자화학 95(1) 97(1) 99(1) 01(1) 03(건조)/ 김익수(金益秀) 42 동물분류학 03(천연) 05(천연)/ 김일진(金一鎭) 35 건축사 97(3) 99(1,3) 01(1,3)/ 김재원(金載元) 09~90 미술사·고고학 52(1부) 55(1부) 60(1) 62(1) 63(1)/ 김정기(金正基) 30 한국건축사 85(1) 87(1) 89(1) 91(1) 93(1) 95(1, 박) 97(1,박)/ 김정배(金貞培) 40 한국사 97(3) 99(3)/김정동(金晶東) 48 근대건축사 03(사적) 05(근대)/ 김정률(金正律) 52 고생물학 05(천연)/ 김정현(金正憲) 46 시민운동 05(제도)/ 김종규(金宗圭) 39 경영학 99(박) 01(박) 03(박) 05(제도)/ 김종민(金鍾民) 49 행정 05(제도)/ 김종영(金鍾瑛) 15~82조각 60(1)/ 김종철(金鍾徹) 39 고고학(문학사) 97(6)/ 김종태(金鍾太) 37 동양미술 97(4)/ 김준민(金遵敏) 14 식물 52(2부) 87(5) 89(5) 91(5) 93(5)/김중업(金重業) 22~88 건축</p>

	60(1) 62(1) 63(1)/ 김중양 (金重養) 45 행정 05(제도)/ 김지희 (金芝希) 39 임직공예 01(4) 03(무형)/ 김창환 (金昌煥) 20 동물 83(3) 85(5) 87(5) 89(5) 91(5) 93(5)/ 김천홍 (金千興) 09~ 민속무용 60(3) 62(2) 63(2) 66(2) 69(2) 71(2) 73(2) 75(2)/ 김철준 (金哲浚) 23~89 한국고대사 73(1) 75(1) 79(1) 81(1) 83(1) 85(3) 87(3)/ 김철호 (金鐵浩) 52 국악이론 05(무형)/ 김태욱 (金泰旭) 34 식물 95(5)/ 김학범 (金學範) 52 조경학 03(천연) 05(천연)/ 김훈수 (金薰洙) 23 동물 60(2) 71(3) 73(3) 75(3) 81(3) 83(3) 85(5) 87(5) 89(5,박) 91(5,박) 93(5,박)/
ㄹ	나선화 (羅善華) 49 미술사(도자사) 05(매장)/ 남문현 (南文鉉) 42 전기공학 03(동산) 05(근대)/ 남태향 (南泰鄉) 동물 52(2부)/ 노중국 (盧重國) 49 한국고대사 03(사적) 05(사적)/
ㄱ	맹인재 (孟仁在) 30 민가 85(1) 87(1) 89(1) 91(1) 93(1) 95(1) 97(1) 99(1) 01(1)/ 문명대 (文明大) 40 불교회화 85(2) 87(2) 89(2,박) 91(2,박) 93(2,박) 95(1) 97(2)/ 민길자 (閔吉子) 33~99 직물사 97(4) 99(4)/
ㅂ	박강철 (朴剛澈) 46 건축사 05(건조물)/ 박규택 (朴奎澤) 44 건축 05(천연)/ 박대순 (朴岱洵) 40 초고지물공예 05(무형)/ 박동길 (朴東吉) 1897~83 지질광물 52(2부) 55(2부)/ 박만규 (朴萬奎) 06~77 식물 52(2부) 55(2부) 60(2) 62(3) 63(3) 66(3) 69(3) 71(3) 73(3) 75(3) 77(3)/ 박범훈 (朴範薰) 48 국악이론 03(무형)/ 박상국 (朴相國) 47 서지학 05(동산)/ 박성래 (朴星來) 40 과학사 03(박) 05(동산)/ 박성실 (朴聖實) 44 공예(민속자료 분석) 03(무형) 05(무형)/ 박언곤 (朴彦坤) 43 건축사 03(건조) 05(건조)/ 박영규 (朴榮圭) 47 전통공예 99(4)/ 박영석 (朴永錫) 32 근대사 83(1) 85(3) 87(3) 89(3) 91(3) 93(3)/ 박영철 (朴英哲) 48 구석기 05(매장)/ 박은정 (朴恩正) 52 법률 03(제도)/ 박헌봉 (朴憲鳳) 07~77 민속음악 60(3) 63(2) 66(2) 69(2) 71(2) 73(2) 75(2)/ 박현수 (朴賢洙) 45 경제인류학 03(박) 05(근대)/ 박호성 (朴鎬星) 50 금속공예 05(무형)/ 배기동 (裴基同) 52 고고학 03(매장)/ 배길기 (裴吉基) 17~ 서예 66(1)/ 배렴 (裴濂) 11~68 한국화 66(1)/ 백대웅 (白大雄) 43 민속악 99(4) 01(4)/ 백영자 (白英子) 45 침선임직공예 05(무형)
ㅅ	서병식 (徐炳植) 37 불교학 91(2) 93(2)/ 서승완 (徐承完) 38 법률 03(제도) 05(제도)/ 서연호 (徐淵昊) 41 연극 99(4) 01(4)/ 서재식 (徐載軾) 14 기획처 예산국장 52(1부)/ 서정덕 (徐廷德) 문교부 문화국장 60(1)/ 서중석 (徐仲錫) 48 현대사 05(근대)/ 석주선 (石宙善) 11~ 복식사 60(3) 62(2) 63(2) 66(2) 69(2) 71(2) 73(2) 75(2)/ 설창수 (薛昌洙) 16~ 문학 60(3)/ 성경린 (成慶麟) 11~ 국악 63(2) 66(2) 69(2) 71(2) 73(2) 75(2) 81(2) 83(2) 85(4) 87(4) 89(4) 91(4) 93(4)/ 손병헌 (孫秉憲) 43 고고학 95(3) 97(6)/ 손보기 (孫寶基) 22 고고학 69(1) 71(1) 87(3) 89(3) 91(3) 93(3)/ 손인석 (孫仁錫) 46 지질학 05(천연)/ 손재형 (孫在馨) 03~81 서예 52(1부) 55(1부)/ 손치무 (孫致武) 11~ 지질학 52(2부) 55(2부) 60(2) 62(3) 63(3) 66(3)/ 송쌍종 (宋雙鍾) 42 세무 03(제도)/ 송준임 (宋浚任) 49 동물계통분류학 99(5,박) 01(5,박) 03(천연) 05(천연)/ 송지영 (宋志英) 16~89 자연경관 85(5)/ 신구영 (申求永) 52(1부)/ 신석호 (申奭鎬) 04~81 조선사 60(1)/ 신찬균 (申瓚均) 37 민속학 87(4) 89(4) 91(4) 93(4) 95(4) 97(4) 99(4) 01(4)/ 신현식 (辛鉉植) 29 건축공학 99(1)/ 심봉근 (沈奉根) 43 고고학 99(6) 01(3,6)/ 심우성 (沈雨晟) 34 민속학 99(4) 01(4)/ 심우준 (沈喞俊) 25, 서지학 97(2)/ 심정보 (沈正輔) 50 역사고고학 03(매장) 05(사적)/ 심정자 (沈貞子) 44 동물분류학 03(박)/ 심지연 (沈之淵) 48 정치사 05(근대)



안병욱(安秉旭) 48 국사학 05(사적)/ **안병희**(安秉禧) 33 중세국어학 95(2) 97(2) 05(국보)/ **안봉원**(安奉遠) 33 조경학 87(5) 89(2) 91(5) 93(3) 95(5) 97(5) 99(5) 01(5)/ **안승주**(安承周) 37~고고학 91(3) 93(3) 95(3) 97(3)/

안휘준(安輝濬) 40 미술사85(2) 87(2) 89(2,박) 91(2,박) 93(2,박) 95(2,박) 97(2,박) 99(2,박) 01(2,박) 03(박,동산,제도) 05(국보,동산,제도)/ **양선희**(楊善禧) 53 전통무용 03(무형) 05(무형)/ **양승영**(梁承榮) 38 지질학 03(천연) 05(천연)/ **양재연**(梁在淵) 민속학 69(2) 71(2) 73(2)/ **예용해**(芮庸海) 29 전통공예 63(2) 66(2) 69(2) 71(2) 73(2) 75(2) 77(2) 79(2) 81(2) 83(2) 85(4) 87(4) 89(4) 91(4) 93(4)/ **오계칠**(吳桂七) 25~ 식물 71(3) 73(3) 75(3)/ **오용자**(吳日容子) 40 식물계통분류 03(박)/ **오종식**(吳宗植) 06~76 언론인 52(1부)/ **오창영**(吳昌泳) 28 수의학 95(5,박) 97(5,박)/ **오휘영**(吳輝泳) 37 조경 87(3) 89(3) 91(3)/ **우한정**(禹漢貞) 32 조서류 95(5) 97(5) 99(5) 01(5)/ **원병오**(元炳晬) 29 조류 66(3) 69(3) 71(3) 73(3) 75(3) 77(3) 79(3) 81(3) 83(3) 85(5) 87(5) 89(5) 91(5) 93(5)/ **원종관**(元鍾寬) 35 지질학 95(5) 97(5) 99(5) 01(5)/ **유기룡**(劉起龍) 국악 71(2)/ **유송옥**(劉頌玉) 37 복식사 95(4)/ **유홍준**(俞弘濬) 49 미술사 03(동산)/ **유홍열**(柳洪烈) 근대사 60(1)/ **유희경**(柳喜卿) 21 전통복식 81(2) 83(2) 85(4) 87(4) 89(4) 91(4) 93(4)/ **윤근**(尹瑾) 46 목칠공예 03(무형) 05(무형)/ **윤내현**(尹乃鉉) 39 한국사 93(3)/ **윤동석**(尹東錫) 18 금속공예 87(2) 89(2) 91(2) 93(2)/ **윤무병**(尹武炳) 24 고고학 81(1) 83(1) 85(3) 87(3) 89(3) 91(3) 93(3)/ **윤미용**(尹美容) 46 아악 03(무형)/ **윤복자**(尹福子) 34 주거환경 99(1) 01(1)/ **윤세영**(尹世英) 34 고고학 93(3) 95(3,박) 97(6,박)/ **윤용이**(尹龍二) 47 미술사(도자사) 95(4) 03(동산) 05(동산)/ **윤일병**(尹一炳) 35 동물학 95(5) 97(5) 99(5) 01(5) 03(천연)/ **윤장섭**(尹張燮) 25 건축사 81(1) 83(1) 85(1) 87(1) 89(1) 91(1) 93(1)/ **윤홍로**(尹洪謨) 39 고건축 05(건조)/ **이강승**(李康承) 49 고고학 03(매장,박) 05(사적,매장)/ **이건무**(李健茂) 47 금속공예(청동기시대) 03(동산,매장) 05(국보,동산)/ **이건용**(李建鏞) 47 민족음악 05(근대)/ **이경성**(李慶成) 19 미술평론 89(박) 91(박)/ **이경준**(李景俊) 45 수목생리학 03(천연)/ **이광규**(李光奎) 32 민속학(사회민속) 91(4) 93(4)/ **이광로**(李光魯) 28 건축의장 87(1) 89(1) 91(1) 93(1) 95(1) 97(1)/ **이광춘**(李光春) 44 지질학 03(천연) 05(천연)/ **이구열**(李龜烈) 32 미술평론 93(박) 95(박) 97(박)/ **이규방**(李揆邦) 50 도시계획 03(제도) 05(제도)/ **이규태**(李圭泰) 33 민속 97(4)/ **이균상**(李均相) 03~85 건축 52(1부) 55(1부)/ **이근성**(李根成) 1895~78 무용 60(3)/ **이기동**(李基東) 43 한국고대사 99(6) 01(6)/ **이기백**(李基白) 24 한국사 71(1) 89(3)/ **이기영**(李箕永) 22~96 불교학 81(1)/ **이난영**(李蘭映) 34 미술사(공예) 99(2) 01(2)/ **이동환**(李東歡) 39 한문학 99(2) 01(2) 03(동산) 05(동산)/ **이두현**(李杜鉉) 24 민속학 60(3) 71(2) 73(2) 75(2) 77(2) 79(2) 81(2) 83(2) 85(4) 87(4) 89(4) 91(4) 93(4)/ **이리형**(李利衡) 41 건축구조 05(건조)/ **이만열**(李萬烈) 38 근현대사 01(3) 05(국보,제도,근대)/ **이민재**(李敏載) 17~91 식물학 52(2부) 55(2부) 62(3) 63(3) 66(3) 69(3)/ **이병도**(李丙燾) 1896~89 국사 52(1부) 55(1부)/ **이삼열**(李三悅) 41 국제 05(제도)/ **이상백**(李相佰) 04~66 사학 52(1부) 55(1부) 62(1) 63(1)/ **이상해**(李相海) 48 고건축 05(건조)/ **이선근**(李瑄根) 05~83 한국사 69(2) 71(1) 73(1) 75(1) 77(1) 79(1)/ **이성무**(李成茂) 37 조선시대사 01(3) 03(사적)/ **이성천**(李成千) 36~2003 국악이론 99(4) 01(4) 03(무형,제도)/ **이수건**(李樹健) 35 한국사(전적고문서) 99(2) 01(2)/ **이순석**(李順石) 05~86 공예 60(1)/

이승녕(李崇寧) 08~94 문학 81(3)/ 이영로(李永魯) 20 식물 91(5) 93(5)/ 이영욱(李英旭) 57 관광 03(제도) 05(제도)/ 이오희(李午熹) 48 보존과학 03(동산) 05(동산)/ 이용관(李庸觀) 55 영화 05(근대)/ 이용희(李用熙) 17~ 회화사 55(1부)/ 이원순(李元淳) 26 한국사 95(3) 97(3) 99(3)/ 이은복(李銀馥) 43 식물분류학 03(천연) 05(천연)/ 이은상(李殷相) 03 자연경관 69(3) 71(3) 73(3) 75(3) 77(3) 79(3) 81(3)/ 이인규(李仁圭) 36 생물학 95(5) 97(5) 99(5) 01(5) 03(천연,제도) 05(국보,천연,제도)/ 이인숙(李仁淑) 49 고고학 03(매장) 05(매장)/ 이인호(李仁浩) 36 국제문화 03(제도)/ 이일구(李一球) 16 식물생태 81(3) 83(3) 85(5)/ 이재(李宰) 44 관방유적 05(근대)/ 이종욱(李鍾郁) 불교학 52(1부)/ 이종욱(李鍾旭) 46 고대사 05(매장)/ 이종욱(李鍾六) 52(1부)/ 이종철(李鍾哲) 44 생활문화 99(4,박) 01(4,박) 03(무형)/ 이주환(李珠煥) 09~72 국악 60(3)/ 이지관(李智冠) 32 불교학 87(2) 89(2)/ 이창복(李昌福) 19~ 식물 69(3) 71(3) 73(3) 75(3) 79(3) 81(3) 83(3) 85(5) 87(5) 89(5) 91(5) 93(5)/ 이창복(李昌馥) 48 지질해양학 05(천연)/ 이청규(李清圭) 54 고고학(청동기) 05(매장)/ 이춘녕(李春寧) 17~ 농업기술사 73(2) 75(2)/ 이춘희(李春熙) 28 서지학 93(2,박) 95(2,박) 97(2,박)/ 이태녕(李泰寧) 24 보존과학 81(1) 83(1) 85(2) 87(1) 89(1) 91(1) 93(1)/ 이태호(李泰浩) 52 회화사 05(동산)/ 이필영(李弼泳) 53 민간신앙 03(무형) 05(무형)/ 이현혜(李賢惠) 49 한국고대사 03(매장) 05(매장)/ 이해구(李惠求) 09~ 국악 60(3) 62(2) 63(2) 66(2) 79(2)/ 이홍직(李弘植) 09~70 한국고대사 52(1부) 55(1부) 60(1) 62(1) 63(1) 66(1) 69(1)/ 이흥식(李興植) 42 수의학 03(천연) 05(천연)/ 임경빈(任慶彬) 22 식물 83(3) 85(5) 87(5) 89(5,박) 91(5,박) 93(5,박)/ 임돈희(任敦姬) 44 생활의례 01(4) 03(무형) 05(무형)/ 임동권(任東權) 26 민속학 66(2) 69(2) 71(2) 73(2) 75(2) 77(2) 79(2) 81(2) 83(2) 85(4) 87(4) 89(4) 91(4) 93(4) 95(4) 97(4)/ 임명직(林命稷) 문교부 문화국장 52(1부,2부)/ 임석재(任皙宰) 03~98 민속 60(3) 62(2) 63(2) 66(2) 69(2)/ 임승남(林昇南) 51 시민운동(종교) 03(제도) 05(제도)/ 임영방(林英芳) 29 미술평론 93(박) 95(박) 97(박)/ 임재해(林在海) 52 놀이 52(무형)/ 임창순(任昌淳) 14~2001 서지학 71(1) 73(1) 75(1) 79(1) 81(1) 83(1) 85(2) 87(2) 89(2) 91(2) 93(2) 95(2)/ 임학선(林鶴璇) 50 전통무용 03(무형)/ 임효재(任孝宰) 41 고고학 95(3) 97(6)/ 임효택(林孝澤) 44 고고학 03(매장)/

ㄸ

장경호(張慶浩) 36 한국건축 89(3) 91(3) 93(3) 95(3) 97(3,6) 01(3) 05(건조)/ 장사훈(張師勛) 16~91 정악 60(3) 71(2) 73(2) 75(2)/ 장석하(張錫河) 53 건축계획 03(사적) 05(건조)/ 장우성(張遇聖) 12 한국화 60(1)/ 장주근(張壽根) 25 민속학 60(3) 85(4) 87(4) 89(4,박) 91(4,박) 93(4,박)/ 장충식(張忠植) 41~2005 불교미술 03(동산,건조)/ 전경수(全京秀) 49 생활민속 03(무형)/ 전상린(田祥麟) 35 동물학 89(박) 95(5) 97(5) 99(5) 01(5)/ 전상운(全相運) 28 과학사(동아시아) 81(1) 83(1) 85(2) 87(2) 89(2,박) 91(2,박) 93(2,박) 95(2,박) 97(2,박) 99(2,박) 01(2,박) 05(국보)/ 전형필(全鑿弼) 06~62 서화 52(1부) 55(1부) 60(1)/ 전형택(全炯澤) 45 한국근세사 03(사적) 05(사적)/ 정경운(鄭慶雲) 22 고건축 77(1)/ 정기용(鄭奇裕) 45 건축사 05(근대)/ 정기호(鄭其浩) 52 조경 05(사적)/ 정동오(鄭瞳畝) 30 조경사 95(3) 97(3) 99(3) 01(3)/ 정문기(鄭文基) 1898~ 어류 60(2) 62(3) 63(3) 69(3) 77(3) 79(3)/ 정병호(鄭炳浩) 27~ 무용 81(2) 83(2) 85(4) 87(4) 89(4) 91(4) 93(4)/ 정양모(鄭良謨) 34 한국도자사 85(2) 87(2) 89(2) 91(2) 93(2,박) 95(2,박) 97(2,박) 99(2,박) 01(2,박) 03(박,제도) 05(국보)/

	<p>정영호(鄭永鎬) 34 미술사 60(2) 85(1) 87(1) 89(1) 91(1) 93(1) 95(2) 97(1) 99(1) 01(1)/ 정영화(鄭永和) 42 고고학(구석기시대) 99(6) 01(6) 03(매장,제도,사적) 05(사적)/ 정옥자(鄭玉子) 42 한국사 99(3) 01(3)/ 정우택(鄭于澤) 53 불교회화 05(동산)/ 정인국(鄭寅國) 16~75 건축 66(1) 71(1) 73(1) 75(1)/ 정재훈(鄭在鍾) 38 조경학(전통조경) 97(3) 99(3) 01(3) 03(사적) 05(국보)/ 정징원(鄭澄元) 41 고고학 01(6) 05(국보,매장,제도)/ 정창희(鄭昌熙) 20 지질 60(2) 77(3) 79(3) 81(3) 83(3) 85(5) 87(5) 89(5) 91(5) 93(5)/ 정대현(鄭台鉉) 1882~71 식물 55(2부) 60(2부)/ 정해조(鄭解朝) 45 목칠공예 99(4) 01(4)/ 조도순(曹度純) 55 환경생물학 05(천연)/ 조동일(趙東一) 39 민속학(민속연극) 95(4)/ 조명기(趙明基) 05~88 불교사 52(1부) 66(1) 69(1) 71(1) 73(1) 75(1)/ 조복성(趙福成) 05~71 동물 55(2부)/ 조선미(趙善美) 47 회화사 05(동산)/ 조성룡(趙成龍) 44 현대건축사 05(건조)/ 조유전(趙由典) 42 고고학 99(3,6) 01(3,6) 03(매장,사적)/ 조흥동(趙興東) 41 전통무용 05(무형)/ 조흥운(趙興胤) 47 문화인류학 95(4) 97(4)/ 주남철(朱南哲) 39 건축사 85(1) 87(1) 89(1) 91(1) 93(1) 95(1) 97(1) 99(1,박) 01(1,박)/ 지건길(池健吉) 43 고고학 01(6) 05(매장)/ 지순임(智順任) 47 동양미학 03(박)/ 지승만(池勝晩) 문교부 성인교육과장 52(1부,2부)/ 진홍섭(秦弘燮) 18 미술사 66(1) 69(1) 71(1) 73(1) 75(1) 81(1) 83(1) 85(2) 87(2) 89(2,박) 91(2) 93(2) 05(국보)/</p>
ㄸ	<p>채상식(蔡尙植) 52 사학 05(사적)/ 천관우(千寬宇) 25~91 한국사 83(1)/ 천병옥(千炳玉) 35 건축사 03(건조)/ 천혜봉(千惠鳳) 26 서지학 81(1) 83(1) 85(2) 87(2) 89(2) 91(2)/ 최규성(崔圭成) 41 한국사 03(사적)/ 최기수(崔杞秀) 47 조경사 05(사적)/</p>
	<p>최기철(崔基哲) 10~ 동물 52(2부) 55(2부) 60(2) 62(3) 63(3) 66(3) 69(3) 71(3) 73(3) 75(3)/ 최래옥(崔來沃) 40 구비문학 03(무형)/ 최만린(崔滿麟) 35 조소 99(박) 01(박)/ 최몽룡(崔夢龍) 46 고고학 99(6) 01(6)/ 최범술(崔凡述) 04~79 불교회학 52(1부)/ 최병현(崔秉鉉) 48 고고학 03(매장) 05(매장)/ 최상수(崔常壽) 18~ 민속 60(3)/ 최석원(崔錫源) 49 지질학 03(건조) 05(건조)/ 최숙경(崔淑卿) 35 한국사 99(6) 01(6)/ 최승희(崔承熙) 37 한국사(고문서) 99(2,박) 01(2) 03(동산) 05(동산)/ 최용선(崔鑄善) 46 세무 05(제도)/ 최영희(崔永禧) 26 한국사 79(1) 81(1) 85(3) 87(3) 89(3) 91(3) 93(3) 95(3) 97(3) 99(3) 01(3)/ 최종천(崔鍾千) 임업 52(2부)/ 최태현(崔泰鉉) 48 음악 05(무형)/ 최효승(崔孝昇) 43 건축사 03(건조)/ 최희순(崔熙淳) 16~84 미술사 66(1) 69(1) 71(1) 73(1) 75(1) 77(1) 79(1) 81(1) 83(1)/ 추원교(秋園教) 50 금속공예 03(무형)/</p>
ㅎ	<p>한병삼(韓炳三) 35~2003 고고학 85(3) 87(3) 89(3,박) 91(3,박) 93(3) 95(3) 97(6) 99(6)/ 한영우(韓永愚) 38 한국사 93(3) 95(3) 97(3) 99(3) 01(3) 03(제도,사적) 05(국보,사적,제도) / 함규황(咸奎晃) 40 조류학 05(천연)/</p>
	<p>허선도(許善道) 27 한국사 85(3) 87(3) 89(3) 91(3)/ 허영일(許榮一) 49 무용 99(4) 01(4)/ 허영환(許英桓) 37 동양미술사(회화) 99(2)/ 허증수(許增秀) 10 문교차관 52(1부,2부)/ 현철(玄哲) 1891~65 연극 60(3)/ 홍선표(洪善杓) 49 한국회화사 03(동산)/ 홍성각(洪性珪) 39 수목생리 97(5)/ 홍시환(洪始煥) 25 동굴 87(5) 89(5) 91(5) 93(5)/ 홍성목(洪性穆) 35 건축구조 01(1) 03(건조)/ 홍윤식(洪潤植) 34 불교미술 87(2) 89(2) 91(2) 93(2) 95(2)/ 홍이섭(洪以燮) 14~74 역사학 69(1)/ 홍현식(洪顯植) 국악 66(2)/ 황병기(黃秉冀) 36 전통음악 95(4) 97(4)/ 황수영(黃壽永) 18 불교미술 52(1부) 55(1부) 60(1) 62(1) 63(1) 73(1) 75(1) 77(1) 79(1) 81(1) 83(1) 85(2) 87(2) 89(2) 91(2)/ 황윤원(黃潤元) 54 행정 03(제도)/</p>
총	328명